

해외연구관 지정과제  
제2014-3호



---

**- 각 국의 선거비용 조사**  
**- 통일 독일의 선거제도**

---

2014. 7.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

- 「각 국의 선거비용 조사」 와 「통일 독일의 선거제도」 파악을 위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6개국 연구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취합하였음.
- 본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관 개인의 의견 또는 견해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이나 견해가 아님을 밝혀둠.

# 목 차

## □ 각 국의 선거비용 조사

1. 미 국 .....	6
2. 영 국 .....	20
3. 프랑스 .....	42
4. 일 본 .....	68
5. 호 주 .....	92

## □ 통일 독일의 선거제도

1. 독 일 .....	108
--------------	-----



**국가별 제도개요**

**1. 미국(United States of America)**

**(1) 선거비용 관련 법규 개요**

- 미국의 선거비용 관련 규제는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Law)」, 「초당적 선거개혁법안(BCRA,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BCRA)」,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은 선거자금의 모금과 회계보고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선거비용 지출에 대한 제한과 법적 제재는 느슨하다고 볼 수 있음.

**(2) 선거비용에 대한 통제와 검증**

- 연방선거운동법은 연방선거후보자와 후보자 관련 정치위원회가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상기의 회계보고서는 전자파일 형태로 정기적으로 제출하며, 연방선거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일반에 공개함.

**(3) 선거비용 조사기관 및 조사권한**

- 연방선거위원회는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정치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권과 현장조사권을 가지며, 선거비용 및 회계 관련 자료요구권을 보유함.
- 이외에도 연방선거운동법은 연방선거위원회의 소환이나 명령에 불복할 경우 범정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선거비용 규제에 대한 평가**

- 연방선거위원회가 법적으로 현장조사권과 회계검사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위원 6인이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위원인 관계로 소속 정당의 이익에 배치되는 조치에 대해 승인하지 않거나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 2. 영국(United Kingdom)

### (1) 선거비용 관련 법규 개요

- 영국의 선거비용 규제 법률은 1883년에 제정된 「부패 및 위법행위 방지법 1883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 1883)」에 기원을 두고 있음.
- 선거비용 관련 규제는 선거주체의 자금 획득에 대한 제한보다는 주로 정당 및 개별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규모 제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 선거비용에 대한 통제와 검증

- 총수입 또는 총지출이 250,00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독립적 감사를 통과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 지출 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 보고서를 온라인상에 게시하고 있음.

### (3) 선거비용 조사기관 및 조사권한

- 선관위는 자료요구권, 이해관계자 소환권, 선관위 요청 불응시 벌금 부과권과 같은 제재수단을 보유하고 있음.
- 또한 선거비용 초과 지출 정황이 상당할 경우 선관위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선거활동 중지명령을 할 수 있음.

### (4) 선거비용 규제에 대한 평가

- 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선거비용 지출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견되고,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지출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됨.
- 이를 위해 선거비용 지출제한 규정을 장·단기 구분하는 방식에서 단일시기로 대체하여 위법사례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있음.

### 3. 프랑스(French Republic)

#### (1) 선거비용 관련 법규 개요

- 프랑스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1988년에 처음으로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현재는 「선거법(Code électorale)」에서도 선거비용 모금과 지출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음.

#### (2) 선거비용에 대한 통제와 검증

- 후보자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CNCCFP)」에 회계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회계보고서는 전문회계사들에 의해 승인받아야 함.
-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 관보를 통해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공개하며, 제3자는 보고서 원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 (3) 선거비용 조사기관 및 조사권한

-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가 선거비용 관련 1차 조사기관으로서 회계보고서의 위법 여부를 확인함.
-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전국선거(대통령 선거, 상·하원 선거 및 국민 투표)의 경우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 지방선거의 경우 행정재판소(Tribunat administratif) 또는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이 담당하고 있음.
- 선거비용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선거비용 보전금액 삭감, 벌금부과권, 의원직 및 피선거권 박탈 등이 있음.

#### (4) 선거비용 규제에 대한 평가

- 프랑스는 현금모금 제한, 법인의 후원 금지, 선거비용 공개, 재정대리인을 통한 지출 통제, 외부 회계전문가에 의한 감사 등을 통해서 선거비용의 투명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4. 일본(Japan)

##### (1) 선거비용 관련 법규 개요

- 선거비용 관련 법규로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규정법」, 「국회의원 선거 등 집행경비기준에 관한 법률」이 있음.
- 일본은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제한, 출납대리인을 통한 선거비용 수입·지출, 회계보고 의무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음.

##### (2) 선거비용에 대한 통제와 검증

- 공직후보자는 출납책임자를 선임·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출납책임자는 선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선거운동비용수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 (3) 선거비용 조사기관 및 조사권한

- 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선거비용수지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참고로 일본은 정치자금의 감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가 ‘등록 정치자금감사인’으로 등록하여 국회의원관계정치단체의 정치자금을 감사하고 있음.

##### (4) 선거비용 규제에 대한 평가

- 일본은 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의 오류를 사후에 정정하는 사례가 종종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 5. 호주(Australia)

### (1) 선거비용 관련 법규 개요

- 호주는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에서 선거비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동법 제316조에서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연방선거법은 선거비용 규제에 있어 영국 등 영연방국가와는 다르게 지출보다는 수입에 대해 중점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음.

### (2) 선거비용에 대한 통제와 검증

- 선거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느슨한 회계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회계보고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선거비용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호주연방선거관이 해당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회계자료 미보고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명단 공개를 하고 있음.

### (3) 선거비용 조사기관 및 조사권한

- 호주연방선거법은 호주연방선거관에 선거비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비용 출처에 대해서 각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호주연방경찰은 형법에 따라 연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관련 사기 행위 등에 대해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호주연방선거관은 필요시 금융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거비용 관련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



미 국

미국 연구관 : 박천호

## 1. 선거비용(선거자금) 관련 법규

- 선거비용 관련 규제는 1974년에 제정된 「연방선거운동법(Federal Election Campaign Law)」 과 2002년에 제정된 「초당적 선거개혁법안(BCRA, Bipartisan Campaign Reform Act, BCRA)」, 그리고 「내국세법(IRC, Internal Revenue Code)」 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미국의 선거비용 관련 법률은 선거자금 모금 및 그 보고에 대한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대한 정의 및 선거운동에 포함되는 활동을 명시하는 조항 역시 선거비용 규제의 대상이 되는 활동의 범주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선거비용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활동을 먼저 정의해야 하는데, 연방선거운동법의 제431조 제20항 A에 “연방선거관련 활동(Federal election activity)”에 속하는 활동이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이러한 연방선거 관련 활동에 지출된 자금은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된 법률의 규제를 받게 됨.
- 연방선거 관련 활동에 속하는 활동은 다음과 같음.<sup>1)</sup>
  - (i) 정기적으로 예정된 연방선거의 실시일 전 120일부터 연방선거일까지의 유권자등록활동

1) 연방선거운동법 제431조 20항 (A).

- (ii) 유권자 파악, 투표독려활동 또는 연방공직에 출마한 후보가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선거와 관련된 일반 선거 관련 활동
  - (iii) 신원이 명백히 밝혀진 연방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언급하는 대중홍보와 그 직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혹은 반대하거나 공격하는 대중홍보(홍보의 내용이 명시적으로 후보자에 대해 투표할 것 혹은 투표하지 말 것을 주창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음)
  - (iv) 정당의 주, 지역구 혹은 지역위원회에 의하여 고용된 자가 월간 보수를 받는 시간의 25퍼센트 이상을 연방선거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활동
- 한편 같은 항 B의 활동은 연방선거관련 활동에 포함되지 않음. 이에 명시된 활동들은 주로 연방선거후보자가 아닌 주 혹은 지역의 공직후보자의 선거활동을 포괄하며, 연방선거운동법의 적용 범위를 연방선거와 관련된 선거운동으로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와 같이 주 혹은 그 하위 단위의 공직후보자와 관련된 선거운동에 지출된 자금은 연방선거운동법의 선거자금 관련 규정에 의해 규제받지 않음.
- B항에 나타난 연방선거 관련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활동들은 다음과 같음.<sup>2)</sup>
- ‘연방선거활동’에는 정당의 주, 지역구, 혹은 지역위원회가 다음의 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것은 포함되지 않음.
    - (i) 상기 (A)의 (i)이나 (ii)에 규정된 연방선거활동의 홍보가 아닌 주 혹은 지역의 명백히 밝혀진 공직 후보자에 대한 홍보
    - (ii) 상기 (A)에 규정된 연방선거활동에 소비되도록 지정된 기부가 아닌 주나 지역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기부

2) 연방선거운동법 제431조 20항 B.

- (iii) 주, 지역구, 혹은 지역의 전당대회 비용
  - (iv) 주 혹은 지역의 공직후보자들만을 홍보하는 지역홍보물, 단추, 차량부착물, 게시판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또한 연방선거운동법 제434조 f의 3항의 A에 규정된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electioneering communication)”과 관련된 활동에 지출된 경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이러한 경비들은 후보자에 대한 기부 혹은 후보자나 정당에 의한 지출을 통한 선거자금으로 간주되어 연방선거운동법의 규제 대상이 됨.
-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출이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수권위원회와의 협조 하에 진행된 것일 경우
  - 선거운동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지출이 연방, 주, 지역 정당이나 그 소속 위원회 및 기관 또는 그 대리인과의 협조하에 한 것일 경우
- 선거자금의 범주와 관련하여 내국세법내의 대통령선거운동기금에 대한 장(제95장)에서 적격선거운동경비(qualified campaign expense)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음.
- 적격선거운동경비라 함은 다음과 같이 지출한 경비를 의미함.<sup>3)</sup>
- 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그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
  - 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그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

---

3) 내국세법 제95장 제9002조 11항의 A.

- 대통령직 및 부통령직에 입후보하는 정당의 후보자 수권위원회가 이러한 공직후보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당선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

## 2. 선거비용의 수입 범위

### (1) 정부지원금

- 미국 내국세법의 대통령선거운동기금법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대통령 후보자들이 내국세법 제95장의 제9006조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통령선거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선거비용이 연방선거운동법 제441조의 a의 (b)에 명시된 대통령 후보자 지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됨.<sup>4)</sup>
  - 대통령 후보지명을 위한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10,000,000달러. 단, 1개 주에 있어서는 그 주의 선거연령 인구수에 16센트를 곱한 금액 또는 200,000달러 중 다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대통령 선거운동의 경우 20,000,000달러.
- 부통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지출된 비용은 대통령 선거운동에 대한 지출로 간주됨. 이와 더불어 후보자의 수권위원회(authorized committee) 혹은 기타의 대리인이나 이들에 의해 의뢰받은 자에 의한 지출 역시 대통령 선거운동 비용으로 간주됨.
- 이 지출 한도는 1974년의 연방선거운동법의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4) 연방선거운동법 제441조 a의 (b), (c).

물가지수의 상승에 따라 증액됨. 2012년 대통령선거의 경우, 예비선거의 실질적인 지출 한도는 54,744,840 달러였으며, 본선거의 지출 한도는 91,241,400 달러였음.

- 최근 대통령선거에서는 각 후보들이 이 지출한도를 준수함으로써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기보다는 정부보조금을 포기하고 무제한적인 모금을 통하여 천문학적인 액수의 선거자금을 지출함으로써 대통령선거 자금 지출 규제 및 정부 지원의 의의가 퇴색되고 있음.

## (2) 비정부지원금

### 가. 개인자금

- 연방선거운동법 제431조의 26항에서는 개인자금(personal fund)의 정의를 제공하고 있음. 개인자금은 다음의 출처로부터 출연된 금액을 뜻함.<sup>5)</sup>
  - 주법에 의하여 개인이 후보가 된 당시에 그 후보가 처분할 수 있는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자산
  - 후보자의 현재 선거주기 동안에 얻은 수익으로서,
    - (i) 정규직업으로부터의 월급과 기타 수익
    - (ii) 후보자의 주식이나 기타 투자의 양도로부터 파생된 수익
    - (iii) 후보자가 받은 유산
    - (iv) 선거주기의 시작 전에 확립된 기금으로부터의 수익
    - (v) 선거주기 시작 후에 후보자를 수혜자로 하는 유증에 의하여 확정된 기금으로부터의 수익

5) 연방선거운동법 제431조 26항

(vi) 선거주기의 시작 전에 후보자가 통상 받아온 개인적인 선물

(vii) 복권 등 기타 합법적인 확률게임으로부터의 수익

-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공유하는 자산의 경우, 자산의 소유권이나 양도증서 상 후보자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그 자산의 1/2로 간주한다.

#### 나. 기부금

- 연방선거운동법 제431조 제8항은 기부금에 대한 정의를 제공하고 있음.
  - 연방공직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체의 증여, 예약금, 대부금, 전도금 또는 금전이나 유가물 등
  - 정치위원회에 제공된 제3자의 인적 용역에 대해 다른 사람이 보수를 지급하는 것
- 연방 공직선거 후보자들은 주로 각 개인 혹은 정치위원회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함. 기업 혹은 노조와 같이 이익단체로 간주되는 단체들은 직접적으로 후보자에 기부할 수 없으며, 이들이 기부금을 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정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함.
- 연방선거위원회는 각 2년의 선거주기마다 각 개인이나 정치위원회가 기부할 수 있는 금액한도를 제시하고 있음.

○ 2013-14년도 기부 제한액 현황<sup>6)</sup>

구 분	후보자 또는 후보자 위원회에 대한 기부(선거당)	전국정당위원회에 대한 기부(연간)	총액제한
개인기부	\$2,600	\$32,400	2년의 선거주기동안 \$123,200; 후보자에게 대하여 선거당 \$48,600; 전국정당위원회와 정치활동위원회에 대하여 선거당 \$74,600
전국정당위원회	\$5,000	제한 없음	상원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당 \$45,400
주, 지역구 및 지역 정당위원회	\$5,000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복수후보위원회	\$5,000	\$15,000	총액제한 없음
복수후보위원회가 아닌 정치활동위원회	\$2,600	\$32,400	총액제한 없음
수권선거운동위원회	\$2,000	제한 없음	총액제한 없음

○ 한편 최근 미국연방대법원이 Mccutcheon v. Federal Election Committee 케이스에 대한 판결을 통해 개인이 2년의 선거주기 동안에 연방선거 후보자에게 기부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한 연방선거 운동법의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상기의 표에서 개인의 기부한도 금액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6) <http://www.fec.gov/info/contriblimitschart1314.pdf> (검색일: 2014. 6. 19.)

- 개인의 후보자에 대한 48,600달러, 정당위원회에 대한 74,600달러, 후보자 및 정당위원회에 대한 123,200달러의 기부 총액 제한은 폐지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기업이나 노동조합의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에 대한 총액 제한 규정은 유지됨.

### 3. 선거비용의 지출 범위

- 연방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지출할 수 있는 선거자금의 한도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는 후보자들이 개인자금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한 연방선거운동법을 근거로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지출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의미함.
- 내국세법의 대통령 선거운동기금의 편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 선거운동자금의 지출한도는 국고로부터의 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한 제한사항이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지출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없음.
- 연방선거운동법은 개인자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상원선거의 후보자가 주간 공명선거운동비용(State-by-State competitive and fair campaign formula)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서나 사전 통지의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는 상기 규정된 액수를 초과하는 지출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sup>7)</sup>
-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의 전국위원회 또는 주의 정당위원회는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자금 지출에 있어서 제한을 받음.
- 정당의 전국위원회는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하여 2센트에 미국의 선거연령 인구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sup>8)</sup>

7) 연방선거운동법 제434조 제a항의 6.

- 정당의 전국위원회 또는 주위원회의 하부위원회를 포함하는 주위원회는 그 당의 연방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1개의 주에서 다음 금액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을 할 수 없음.<sup>9)</sup>
  - 1인의 의원만이 당선되는 상원의원이나 하원선거의 후보자의 경우, 주의 선거연령 인구수에 2센트를 곱한 액수와 20,000달러 가운데 높은 금액
  - 기타 다른 주의 하원의원, 대의원, 보호령대표 선거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10,000달러

#### 4. 선거비용에 대한 통제와 검증

- 연방선거운동법은 연방공직선거 후보자와 관련 정치위원회들이 지출과 관련된 영수증과 회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회계보고서는 월별 보고서, 선거전 보고서, 선거후 보고서, 분기별 보고서 등으로 분류됨.<sup>10)</sup>
-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경우 연방선거위원회, 상원선거 후보자들은 상원사무처, 하원선거 후보자들은 하원사무처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후보자들과 정치위원회는 상기의 보고서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연방선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고서들은 전자파일의 형태로 연방선거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열람이 가능함.

---

8) 연방선거운동법 제441조 제a항의 d의 2.

9) 연방선거운동법 제441조 제a항의 d의 3.

10) 연방선거운동법 제432조, 제434조.

## 5. 조사기관의 현황과 조사권한

### (1) 조사기관 및 조사권한

- 연방선거운동법 제437조c의 (b)의 (2)는 연방선거관리위원회의 연방선거운동법과 내국세법의 대통령선거운동기금 관련 법률에 관련된 민사상 강제적 배타적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음.
- 연방선거위원회는 연방선거운동법 제438조 (b)에 의거하여 회계보고서를 제출한 정치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권 및 현장조사권을 가짐. 연방선거위원회는 위원 중 4인 이상의 찬성으로 회계검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회계검사는 결정 이후 30일 이내에 실시되어야 함. 단, 후보자의 수권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 및 현장조사는 선거 이후 6개월 이내에 실시될 수 있음.<sup>11)</sup>
- 이외에 연방선거위원회는 연방선거운동법 제437조d의 (a)에 명시된 권한을 가짐. 이에 명시된 권한은 대체로 선거비용 및 회계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고,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이 발견될 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법기관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를 포괄함.
  - 어느 누구에게나 특별명령이나 일반명령으로써 연방선거위원회가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선서하여 서면보고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게 하는 권한
  - 선거 또는 증언을 시키는 권한
  -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서명한 소환장에 의하여 증인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고, 관련 증거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
  - 소송절차나 조사에 있어서 연방선거위원회가 지정하는 사람 앞에서

11) 연방선거운동법 제438조의 (b).

선서증서에 의하여 증언을 시키고 집행하며, 상기의 조항과 마찬가지로 증언 및 증거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

- 연방선거운동법 및 내국세법 상 대통령선거운동기금 관련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방선거위원회의 명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민사소송에 대한 변호와 불복을 할 수 있는 권한
- 연방선거운동법 제437조의 f에 따라 자문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
- 자발적인 법의 준수를 장려하기 위하여 조사와 청문을 신속히 실시하고, 명백한 위법에 대하여 해당 사법기관에 통지할 수 있는 권한

○ 연방선거운동법의 제437조d의 (b)는 관할구역의 지방법원이 연방선거위원회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소환이나 명령에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 명령에 불복할 경우 법정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2) 선거비용 관련 위법에 대한 제재

- 연방선거운동법 제437조g의 (d)는 선거자금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sup>12)</sup> 기부금, 후원금, 또는 지출금의 조성, 수수, 보고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알면서 고의로 위반한 자는,
  - 연간 총 25,000달러 이상에 대하여 위반한 자는 미연방법전 제18편에 의거하여 벌금형을 받거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연간 총 2,000달러 이상 25,000달러 미만에 대하여 위반한 자는 미연방법전 제18편에 의거하여 벌금형을 받거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12) 연방선거운동법 제437조g (d).

## 6. 선거비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연방선거위원회의 주도하여 연방선거운동법을 근거로 진행되는 미국의 선거비용규제는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우선, 연방선거운동법과 2002년의 초당적 선거개혁법 등의 제정으로 개인 혹은 이익단체의 기부금 제한과 회계지출 보고 등은 비교적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거비용 지출 제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규제가 불가능함.
- 최근에는 개인의 기부금 총액 제한에 대한 연방선거운동법의 규제가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 개인의 기부금 총액에 대한 제한 역시 사라질 예정이며, 이러한 추세가 기업이나 노동조합과 같은 이익 단체와 정치위원회의 기부에 대한 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됨.
- 연방선거위원회는 법적으로는 정치위원회에 대한 현장조사권 및 회계감사권을 소유하고 있으나, 연방선거위원회는 구조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방선거위원회의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선거비용의 규제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어 왔음.
- 연방선거위원회의 6인의 위원들은 형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의회에 의해 선정되며, 4명 이상의 위원이 한 정당에 소속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상은 각각 3명의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각 정당에 소속된 위원들은 각자 소속 정당의 이익에 위배되는 조치를 승인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선거비용 규제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연방선거위원회가 취할 수 있는 상당수의 조치는 위원들 중 4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sup>13)</sup> 소속 정당에 따라 의견이 갈리면 사건에 대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sup>14)</sup>
  - 1999년, 연방선거위원회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와 관련 정책 집단이 연방선거에 해외로부터의 기부자금을 사용했다고 할만한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소속 정당에 따라 3:3의 교착 상태에 빠졌음.
  - 2002년, 연방선거위원회는 위원회의 “지지 표명”에 대한 정의를 뒤집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3:3의 교착 상태에 빠졌음.
  - 2002년, 연방선거위원회는 뉴욕 주 예비선거에서 George W. Bush 후보가 John McCain 후보를 제압하는 데 일조하는 정치광고에 2,000,000달러 이상을 지출한 두 형제의 위장 단체였던 “청정대기를 위한 공화당원들(Republicans for Clean Air)”라는 단체를 조사하기 위한 표결에서 3:3의 교착상태에 빠진 바 있음.
- 지출 제한에 대한 위반 사실에 대한 4인 이상의 합의가 도출된 경우에도, 구체적인 기소 항목에 대해서는 과반의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초당적 선거개혁법안이 제정되기 전에 연방선거위원회는 정당의 운영이나 건물 등 설비에 대해서만 운용 및 지출될 수 있는 소위 연

---

13) 연방선거운동법 제437조의 (c), 제437조의 (2), 제437조의 (4)의 (A), 제437조의 (5)의 (C), 제437조의 (6)의 (A).

14) Wilcox, Clyde. 2005. "Campaign Finance Law Enforcement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Steven Griner and Daniel Zovatto. eds.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in the Americ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성자금의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것을 사실상 방치하였음. 1996년, 연방선거위원 6인은 당시 민주당과 공화당이 연성자금을 불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이슈 광고를 제작하는 데 사용하였기 때문에 빌 클린턴 당시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밥 돌 당시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는 연방선거위원회 법률 자문위원들과 감사관들의 권고를 전원이 기각한 바 있음.<sup>15)</sup>

- 설사 연방선거위원회의 위원들이 선거비용 관련 법률 위반에 대한 조사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발자의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고발에 대해서는 조사 및 조치가 불가능하며,<sup>16)</sup> 조사에 착수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시의적절한 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음.<sup>17)</sup>
- 또한, 의회는 지속적으로 연방선거위원회가 잠재적으로 양당의 지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규제를 강화 및 시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선거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고 있음. 1976년과 2000년 사이에 연방선거 관련 지출은 약 10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연방선거위원회의 예산과 직원은 100%도 증가하지 않았음. 예산은 각 선거주기마다 고작 45개의 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 만큼 배정되었는데, 이는 정치위원회들이 제출하는 전체 보고서의 0.6%도 안 되는 수치임.
-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 때문에 의회로부터 독립적인 한 명의 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선거관리기관의 설립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관리 기관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현재 이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임.

15) Wilcox, Clyde. 위의 논문.

16) 연방선거운동법 제437조g의 (1).

17) Wilcox, Clyde. 위의 논문.



영국 연구관 : 윤성원

## 1. 선거비용(선거자금) 관계 법규

### (1) 관련 법규 현황

- 선거비용(선거자금)과 관련한 영국의 제도는 선거 주체의 자금 획득에 대한 제한보다는 주로 정당 및 개별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규모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 후보자들은 개별 선거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제한된 범위의 비용만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법상 명시된 선거비용을 초과지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후보자에 의한 과도한 선거비용 억제를 위한 법안은 1883년에 제정된 「부패 및 위법행위방지법 1883 (Corrupt and Illegal Practices Prevention Act 1883)」에 기원을 두고 있음. 그러나 「국민대표법 1983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RPA 1983)」 및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Political Parties, Elections and Referendums Act; PPERA 2000)」 등은 보다 최근의 흐름을 반영한 선거비용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1992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Act 1992)」, 「회사법 2006 (Companies Act 2006)」, 「정

당 및 선거법 2009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 「선거관리법 2006 (Electoral Administration Act 2006)」 등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2) 법규별 주요내용

가. 「국민대표법 1983」

- 「국민대표법 1983」는 △인가받지 않은 비용지출의 금지(s.75) △선거비용 상한선 제한(s.76) △지방선거에서 공동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s.77) △선거비용 납입 시한(s.78) △선거비용 보고서 제출(s.81) 등을 광범위하게 규정함.

[관련규정]

「국민대표법 1983」

**75 인가받지 않은 비용지출의 금지.**

(1) 후보자,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 그리고 당해 운동원에 의해 서면으로 인가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다음과 같은 행위로 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비용을 지출할 수 없다 -

- (a) 공청회 혹은 대중공개를 위한 모든 조직 작업; 또는
- (b) 광고, 안내문 또는 출판물의 발행; 또는
- (c)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후보자, 후보자의 견해,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또는 다른 후보자를 폄하하는 종류의 또 다른 발표행위

그러나 (c)의 경우 신문, 정기간행물 또는 BBC나 독립적 방송사에서 제작되는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발표도 제한하지 않는다.

「Representation of the People Act 1983」

75 Prohibition of expenses not authorised by election agent.

(1) No expenses shall, with a view to promoting or procuring the election of a candidate at an election, be incurred by any person other than the candidate, his election agent and persons authorised in writing by the election agent on account -

- (a) of holding public meetings or organising any public display; or
- (b) of issuing advertisements, circulars or publications; or
- (c) of otherwise presenting to the electors the candidate or his views or the extent or nature of his backing or disparaging another candidate,

but paragraph (c) of this subsection shall not restrict the publication of any matter relating to the election in a newspaper or other periodical or in a broadcast made by the British Corporation or the 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

(중략)

나.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 「국민대표법 1983」에 규정된 내용을 시대 흐름에 맞게 전반적으로 개정함.
- 개별 후보자에 의한 선거비용 규제가 주로 「국민대표법 1983」에 의해 운용되는 반면,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은 총선거시 정당의 선거운동 비용 제한기준일을 선거일 전 365일 간(1년)으로 규정함(부록 9. 선거비용의 제한).
- 각 정당들은 총선일자가 미리 공고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선거비용 수입 및 지출 상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다. 「회사법 (Companies Act 2006)」

- 「회사법 (Companies Act 2006)」은 정치헌금과 정치비용의 의미를 규정하고(s.364, 365), 인가받지 않은 정치헌금 및 비용이 발생할 경우 회사 책임자의 의무사항 및 임원·주주간 법적 책임 등을 다루고 있음(s.369~373).

[관련규정]

「회사법 2006」

**366 기부 또는 지출을 위한 인가.**

(1) 회사는 -

- (a) 정당이나 다른 정치조직, 또는 개별 선거 후보자에게 정치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
- (b) 다음 조항에 의해 인가받은 기부 또는 비용지출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켜서도 안 된다.

(2) 기부 또는 비용지출은 반드시 인가받아야 한다 -

- (a) 자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 회사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해
- (b) 다른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 -
  - (i) 당해 회사 구성원들의 결정, 그리고
  - (ii) 관련 지주회사 구성원들의 결정에 의해

「Companies Act 2006」

**366 Authorisation required for donations or expenditure**

(1) A company must not -

- (a) make a political donation to a political party or other political organisation, or to an independent election candidate, or
  - (b) incur any political expenditure,
- unless the donation or expenditure is authoris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visions.

(2) The donation or expenditure must be authorised -

- (a) in the case of a company that is not a subsidiary of another company, by a resolution of the members of the company;
- (b) in the case of a company that is a subsidiary of another company by -
  - (i) a resolution of the members of the company, and
  - (ii) a resolution of the members of any relevant holding company.

(중략)

## 2. 선거비용의 수입범위

### (1) 선거비용 확보방법

#### 가. 정부지원금

- 영국의 모든 정당은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지급하는 회비로 운영됨. 그러나 정치 무관심 계층의 증가에 따른 당원수 감소 등으로 이를 바탕으로 선거비용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은 정부가 정당들의 정책개발과 선거운동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s.12).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도입 이전까지 정당들의 선거비용 수입을 규정하는 법안은 없었음.
- 정부지원금은 ‘정책개발보조금’ (Policy Development Grants: PDGs)’의 이름으로 각 정당들에 배분됨. 주로 정책개발과 관련한 기기구입, 인력운용, 연구자료 수집·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보전(補填)하는 형태이지만, 총선, 지방선거 및 유럽의회선거 등에 소요되는 각 정당의 선거운동 비용 보전을 위해서도 활용됨.<sup>18)</sup>
- 정책개발보조금의 수혜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각 정당은 하원에 최소 2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의회서약법 1866 (Parliamentary Oaths Act 1866)」에 따른 서약을 준수해야 함. 이에 따라 2014년 현재 보수당과 노동당, 자민당을 포함한 총 7개의 정당이 정책개발보조금의 혜택을 받고 있음.<sup>19)</sup>

---

18) *Policy Development grand audit report 2012-2013*, The Electoral Commission, p.3.

19) 해당 정당은 알파벳순으로 다음과 같다. 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 Democratic Unionist Party-D.U.P., Labour Party, Liberal Democrats, Plaid Cymru-The Party of Wales, Scottish National Party (SNP), SDLP

나. 비정부지원금(개인, 단체 등)

- 선거비용 확보에 관한 한 각 정당들의 비정부지원금에 대한 의존은 절대적임. 2013년의 경우 영국 내 등록 정당들의 개인·단체 등에 의한 지원금 확보 규모(£35,736,656)는 같은 기간 공적 지원금 규모(£9,248,716)의 4배에 달함.<sup>20)</sup>
- 보수당의 경우 2013년중 개인과 단체로부터의 기부 금액 (£15,863,107)이 전체 수입(£16,317,383) 규모의 97%에 달함.<sup>21)</sup> 노동당은 동일한 기부금을 받지만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노동조합(trade unions)으로부터 조달함. 자민당 역시 선거비용 조달에 있어 개인 및 단체로부터의 기여금에 크게 의존하는 모습을 보임.
- 선거법은 정당으로 하여금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선거비용 수입을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정당의 대출(loan)규모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선거법의 허점을 이용한 부정사태들이 2006년 돌출한 이후 이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의회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으나 성과 없이 종료됨.
- 이와 관련 닉 클레그(Nick Clegg) 자민당 당수는 2011년 선거비용 수입 등에 대한 개정 문제를 초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이후 2012년과 2013년 수차례에 걸쳐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진전되지 못함. 닉 당수는 이에 대해 “현 정부 하에서 개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언급함.<sup>22)</sup>

(Social Democratic & Labour Party).

20) *Donations to political parties*, UK Political Info (<http://www.ukpolitical.info/Donations.htm>).

21) *ibid.*

22) *Party funding: background and developments since November 2011*, Commons Library Standard Note (Standard Notes SN06123: 7 October 2013).

(2) 수입의 범위

- 정부지원금으로 인한 수입 범위와 관련 각 정당에 배분되는 정책개발보조금의 총 금액은 200만 파운드이며, 첫 100만 파운드는 균일한 금액으로 해당 정당에게 배분됨. 다음 100만 파운드는 지역별 등록 유권자 수에 비례해 해당 지역에서 경쟁하는 정당들에 배분되며 각 정당들의 지역별 득표율에 따라 차등 지급됨(<표 1> 참조).

<표 1> 최근 4개년 간 정당별 PDGs 현황

정 당 명	2010-2011	2011-2012	2012-2013
Conservative and Unionist Party	£456,612	£458,695	£455,193
Democratic Unionist Party	£155,542	£155,577	£155,788
Labour Party	£456,612	£458,695	£455,193
Liberal Democrats	£456,612	£458,695	£455,193
Plaid Cymru	£152,433	£152,075	£151,509
Scottish National Party	£166,648	£160,687	£171,337
Social Democratic and Labour Party	£155,542	£155,577	£155,788
합계	£2,000,001	£2,000,001	£2,000,001

- 비정부지원금(개인, 단체 등)에 의한 수입범위와 관련한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500파운드 이상의 선거비용을 기부받을 경우 ‘허가된 기부자(permissible donor)’로부터만 가능함.<sup>23)</sup>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s.54)에 따르면 허가된 기부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23) *Media handbook: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 (The Electoral Commission: March 2014), p. 16.

- 영국 내에서 등록된 개인유권자, 등록정당, 등록기업, 등록 노동조합, 등록 주택금융조합, 등록 유한책임조합, 등록 공제조합, 영국을 기반으로 하는 비법인 기업 등.

### 3. 선거비용의 지출범위

#### (1) 선거비용 지출방법

-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된 규정은 총선, 유럽의회, 스코틀랜드의회, 웨일즈의회, 북아일랜드의회 등 선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각 정당들은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철저히 기록할 의무가 있음. 각 정당들은 선거 후 선관위에 선거비용 지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 금액 이상의 비용을 지출할 경우 해당 보고서는 반드시 별도의 회계 감사 절차를 거친 것이어야 함.
- 이와 별도로 후보자 개인의 개별 선거비용(candidate spending)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 후보자 비용을 유발하는 요소로는 후보자 선전용 전단지, 게시광고, 웹사이트 운영 및 선거요원 인건비 등이 포함됨. 후보자 선거비용 보고서는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들(Returning Officers: RO)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총선과 같은 주요 선거의 경우 선거관리 위원들은 비용 보고서의 사본을 선관위에 제출해야 함.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s.72)에 따르면 정당 차원의 선거운동 지출(party campaign spending)범위는 관련 선거의 개인별 선거비용 지출과는 별도로 처리됨. 이와 관련 영국선관위는 2007년 정

당과 개별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분리에 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특정한 지출을 유발하는 항목이 입후보자의 비용인지 혹은 정당 차원의 선거비용인지 구분하기 위해 각 정당들은 해당 자료가 특정지역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지 혹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데 활용된 것인지의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그러할 경우 해당 비용은 반드시 후보자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한다.<sup>24)</sup>

## (2) 지출의 범위

○ 선거비용 지출에 해당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음

- 홍보·광고 등과 관련된 제반 행위 (거리 현수막, 웹사이트 홍보, YouTube 영상 홍보 등),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송부된 자료 (편지, 전단지 등 유권자의 회신을 요구하지 않는 자료), 정당 정책이 소개된 자료, 유권자의 투표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시장자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한 조사, 기자회견 및 언론을 상대로 한 활동, 대중이 동원되고 이를 위한 물품, 서비스 활동, 제반 시설 등이 제공되는 집회 및 행사, 선거 홍보를 위한 이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sup>25)</sup>
- 다만 연차휴가 등을 활용해 특정 선거 캠프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자원봉사를 하는 인원에 의한 소요 경비는 지출 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24) *Revised Campaign Expenditure Guidance 2007*, The Electoral Commission. 원문은 다음과 같다. As a starting point, when deciding whether an item on which expenditure has been incurred should be treated as candidates' expenses or party campaign expenditure, parties should consider whether the material promotes or refers to a specific/local candidate. Where an item promotes a candidate or candidates, it is likely that the expenditure should be treated as candidates' expenses.

25) *Overview of party campaign spending*, The Electoral Commission, p. 6.

- 지난 5월 유럽의회선거에서 각 정당에게 할당되었던 지역별 선거비용 지출 범위 및 오는 9월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에 할당된 각 정당별 선거비용 지출 범위는 각각 <표 2>, <표 3>과 같음.
- 유럽의회선거의 경우 각 정당에게 할당된 선거비용 지출 범위는 45,000파운드였으며, 지역별로 할당된 유럽의회 의석수를 승산(乘算)해 지출 범위를 결정함.

<표 2> 2014년 5월 유럽의회선거 지역별 선거비용 지출 제한

(2014.1.23. ~ 5.22 기준)<sup>26)</sup>

선거지역	선거비용 지출 제한
East Midlands	£225,000
East of England	£315,000
London	£360,000
North East England	£135,000
North West England	£360,000
South East England	£450,000
South West England	£270,000
West Midlands	£315,000
Yorkshire and the Humber	£270,000
Wales	£180,000
Scotland	£270,000
Northern Ireland	£135,000

26) *Media handbook: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 (The Electoral Commission: March 2014), p. 15.

<표 3> 2014년 9월 스코틀랜드 국민투표 정당별 선거비용 지출 제한

(2014.5.30.~9.18 기준)<sup>27)</sup>

스코틀랜드 의회 소속 정당	선거비용 지출 제한
Scottish National Party	£1,344,000
Scottish Labour Party	£831,000
Scottish Conservative & Unionist Party	£399,000
Scottish Liberal Democrats	£204,000
Scottish Green Party	£150,000
Other registered campaigners	£150,000
Threshold for registration with the Electoral Commission	£10,000

#### 4. 선거비용에 관한 통제와 검증(제한·금지행위)

##### (1) 선거비용 수입의 제한

- 선거비용 수입 제한을 둘러싼 관련 논의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선거자금 기부가 가능한 기관을 규정한 것 이외에 수입 상한선을 제한한 규정은 없음.
- 외국인 기부자는 상술한 허가된 기부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정당은 허가된 기부자가 아닌 주체로부터의 선거비용 수입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기부 주체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선관위에 반납해야 함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s.56-57」).

27) *Media handbook: Scottish Independence Referendum* (The Electoral Commission: March 2014), p. 9.

(2)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금지

- 정당 차원의 선거비용 지출(party campaign spending) 제한과 관련, 각 정당들은 선거비용제한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지출 선거비용을 할당할 수 있음.
- 각 선거단위를 총괄하는 단일화된 선거비용제한액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선거마다 선거비용 제한액이 다를 수 있음.<sup>28)</sup>
- 다만 전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선거운동처럼 지역별 혹은 선거구별로 균등한 선거비용 지출이 발생할 경우 선거비용 제한은 의석수에 비례하여 적용됨. 현재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의회 의석수는 632석(잉글랜드 533석, 스코틀랜드 59석, 웨일즈 40석)이며, 각 지역별·항목별 선거비용 지출 제한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설정됨.<sup>29)</sup>
  - (지역별 의석수 / 632) \* 항목별 비용
- 2014년 5월 22일 시행된 유럽의회선거 및 지방선거, 오는 9월 18일 시행 예정인 스코틀랜드 독립 국민투표, 2015년 5월 7일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총선 등에 적용되는 정당별 선거비용 지출 제한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음.
  - 유럽의회 및 지방의회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판단하는 규제기간은 동년 1월 23일부터 선거 당일인 5월 22일까지 적용됨.
  - 해당 기간 각 정당들이 사용하는 제반 지출 사항은 선거비용(campaign expenditure)으로 계상됨. 다만 지출 사항이 정당 자체보다 특정 후보자의 당선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우 정당 선거비용에는

28) The Electoral Commission, *Regulated Periods for political parties: 2014-15* (January 2014), p. 8.

29) *Overview of party campaign spending*, The Electoral Commission, pp. 12-13.

적용되지 않음.

- 스코틀랜드 국민투표와 관련한 선거비용 지출 제한 규정은 동년 5월 30일부터 선거 당일인 9월 18일을 기준으로 계상됨.
- 국민투표에 적용되는 선거비용 지출 제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일반 선거에 적용되는 제한 규정과 별도로 취급되며, 특정 정당이 동 국민투표에 10,000파운드 이상의 지출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국민투표 운동원 자격으로 선관위에 등록해야 함.
- 2015년 총선 선거비용 초과 지출 제한은 2014년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7일까지의 시기를 기준으로 적용됨.<sup>30)</sup>

○ 같은 기간 개별 또는 후보자별 선거비용 지출 제한(candidate spending limit)은 다음과 같음.

- 유럽의회선거의 경우 규제 기간은 후보자로 지명된 기간부터 선거 당일까지를 의미하며, 2015년 총선의 경우 2014년 12월 18일부터 후보자 지명 기간까지가 장기 선거운동(長期; long campaign)으로, 후보자로 지명된 기간부터 총선 당일까지의 기간은 단기(短期; short campaign)로 구분되어 차별적으로 선거비용 지출 제한 규정이 적용됨.
- 유럽의회선거에서 정당을 대표하지 않는 후보자의 경우 (£45,000 \* 각 지역에 할당된 의석수), 북아일랜드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135,000의 선거비용 지출 제한 규정이 적용됨.
- 2015년 총선의 경우 장기와 단기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별 선거비용 지출 제한은 각각 (£25,000 + 해당 선거구 유권자 1인당 5/7펜스), (£7,150 + 해당 선거구 유권자 1인당 5/7펜스)으로 적용됨.

30) The Electoral Commission, *Regulated Periods for political parties: 2014-15* (January 2014), pp. 5-6.

- 「로비활동, 비정당 선거운동 및 노동조합 운영법 2014 (Transparency of Lobbying, Non-Party Campaigning and Trade Union Administration Act 2014)」이 지난 1월 30일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 제3자(자선단체 혹은 자발적 봉사조직 및 종교단체를 포함한 이익단체)에 의한 선거개입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임.
- 동 법은 선거운동을 포함해 해당 단체의 정치·사회적 목적을 위한 활동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 지지와 연관된 활동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단체들의 선거비용 지출 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됨.

### (3) 회계보고서의 제출과 자금의 공개

- 선거비용 수입과 관련, 중앙당에 대한 5,000파운드 이상의 후원금 또는 지역구 및 지역정당 사무소에 대한 1,000파운드 이상의 후원금이 지급될 경우 해당 정당은 선관위에 관련 내역을 제출해야 함.
- 한편 2005년 총선 기간 각 정당들이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사실상 불법 선거비용을 확보해 논란이 된 이후 영국 의회는 모든 대출 역시 기존 기부금 수입과 같은 형식으로 선관위에 관련 내역을 제출하도록 규정함 (「선거관리법 2006, c. 22」).
- 총수입 또는 총지출이 250,000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각 단위는 별도의 독립적 감사를 통과한 회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선관위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보고서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독립적 감사관의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6개월 7일이 지나는 시점 전

까지 보고서 제출을 완료해야 함.

- 총수입 또는 총지출이 250,000파운드 이하인 단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4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sup>31)</sup>
- 선관위는 선거비용 지출 내역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고서를 온라인상에 게시함.

## 5. 조사기관의 현황과 조사권한

### (1) 조사기관 현황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 (s.145)」 및 「선거관리법 2006 (c. 22)」 등은 선거비용에 관한 제반 통제와 검증 역할이 선관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2) 조사권한

-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에 따른 선관위의 조사권한은 다소 제한되어 있었으나, 「정당 및 선거법 2009 (The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Act 2009; PPE Act 2009)」 제정 이후 동 조사권한은 대폭 확충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sup>32)</sup>
  -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단위를 막론하고 자료요구권을 발동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관련 이해관계자들을 소환해 인터뷰할 수 있음.

---

31) The Electoral Commission, *Overview of accounts for accounting unit treasurers*, pp. 5-6.

32) *Use of new investigatory powers and civil sanctions* (The Electoral Commission: July 2012), pp. 1-12.

- 해당 관련자들이 선관위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벌금부과와 같은 일정한 조치(제재)를 취할 수 있음.
- 선거비용 지출 초과에 대한 정황이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선관위는 해당 선거운동 주체가 선관위의 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관련 선거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그러나 이 같은 권한은 선거비용 지출 초과 사실이 당해 선거 규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에 상당한 수준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함.<sup>33)</sup>
- 선거자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선거비용 수입 규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자금을 제공받은 정당은 반드시 비용을 반환해야 하며 제공 주체를 찾을 수 없을 경우 해당 금액을 선관위에 반환해야 함.
- 선관위는 관련 정당이 허가되지 않은 기부자로부터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문제의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몰수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 (3) 회계보고서 등 검증방법

-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서 수령 이후 보고서 검증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지침의 유무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국가재원 및 회계법 2000 (Government Resources and Accounts Act 2000, c.20)」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총선 및 지방선거, 유럽의회 선거비용 등과 관련한 각 회계연도의 보고서를 재무부 (HM Treasury)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3) *Media handbook: Scottish Independence Referendum* (The Electoral Commission: March 2014), pp. 10-11.

- 이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RO)의 회계감사 청구의 경우 각 부서의 회계담당자는 보고서를 현금주의(cash basis)에 기반해 작성해야 하며 각 보고서는 반드시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지불 상황 및 영수증, 잔고 상황 등을 적절하게 명시해야 함.
- 국무조정실(Cabinet Office)의 지침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보고서 작성에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직전 선거에서 소요된 비용, 유권자 수, 투표소 수, 우편투표 규모 등. 제반 선거관리위원회(RO)의 회계 청구는 상술한 지침 및 해당 비용지출이 이뤄지기 전 모든 변수들을 고려해 이뤄짐.
- 회계 감사는 재정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상당한 수준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을 포함함.
  - 예를 들면 선거관리위원회(RO)의 선거비용 지출 및 당해 상황이 적절하게 공개되어 왔는지의 여부 및 재정 보고서의 전반적 기재상태 등이 고려됨.<sup>34)</sup>
-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서 내용 검증상의 어려움은 영국국민당(British National Party: BNP)의 2008년 부실 회계보고서 제출 사례에서 극명히 드러남.
  - 선관위는 당시 영국국민당 측에서 제출된 회계보고서가 영국국민당의 재정적 지위에 비추어 「정당·선거 및 국민투표법 2000」에 따른 적확하고 충분한 재정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판단함.
  - 그러나 선관위에 상대적으로 강화된 제재권한을 부여한 「정당 및 선거법 2009」는 2010년 12월 1일 이후에 적용되었기 때문에 설령 회

---

34) The Stationery Office, *Election Accounts: UK and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s 2012-13 Account*, 7 November 2013, pp. 3-6.

계기록 부실 증거를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 이전인 2008년 사건으로 소급 적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

- 선관위 내부적으로 영국국민당의 회계보고서가 부실하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사방안의 부재로 선관위의 결론을 확정짓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음.
  - 피터 워들(Peter Wardle) 당시 선관위원장은 “정당들이 법에 정해진 회계기록의 정확한 기록 작성을 소홀히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해 정당이 불법적 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상기 위반사항과 관련해 제재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좌절감을 느낀다”고 발언함.
  - 「정당 및 선거법 2009」 시행 이후 강력해진 제재 권한을 바탕으로 회계보고서의 부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련자 조사, 금융자료 요구 및 벌금부과 등을 포함한 모니터링 체제가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사 차원에서 방법론적 개선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각 단위의 회계담당자들은 보고서에 해당 연도에 시행된 주요 정치적·경제적 사안과 관련한 개괄적 내용 및 수입지출계정, 자산과 부채가 명시된 대차대조표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는 각 단위의 회계담당자들은 특정한 양식을 고수할 필요는 없으나, 선관위는 보고서 작성에 있어 현금주의와 발생주의(accrual basis)에 기반한 지침을 각기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보고서 견본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선관위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보고서 내용 검증 또는 실사방법 확인의 일환으로 영국 노동당의 2012-13 회계연도 정책개발보조금 회계보고서에 대한 선관위의 분석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 동 선관위 보고서는 △정당의 재정관리 및 재정할당 능력 여부 △회계보고서 내용을 근거할 수 있는 모든 증빙서류 첨부 여부 △증빙서류 가운데 부적격한 지출발생 내역이 있는지의 여부 △보고서 작성과정에서의 오류 발생 여부 △기타 감사에 영향을 미친 사안의 유무 확인 등을 감사의 초점으로 삼음.

#### (4)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벌칙)

- 선관위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다양한 범위의 제재를 활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포함할 수 있음.
- £200 이상 £20,000 이하의 벌금 부과 : 위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며, 28일 이내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이 증가됨.
- 준수 및 복구(restoration) 명령 : 규정을 위반한 개인 또는 기구에게 향후 규정을 준수할 것을 약속 받는 절차로서 준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벌금 부과 등의 추가적 제재 절차에 착수함. 또한 개인 혹은 기구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를 상정해 불법 행위 관련자들에게 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원상태로 복구할 것을 명할 수 있음. 관련자들이 복구 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도 벌금 부과와 추가적 제재가 이어짐.
- 활동중지 명령 : 선관위는 불법 행위 관련자들이 선관위에 의한 시

정 명령을 준수할 때까지 해당 관련자들의 특정 활동을 금지할 수 있음.<sup>35)</sup>

(5) 위법행위 조치내역

○ 2014년 이후 선관위가 발표한 주요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내역은 <표 4>를 참조

<표 4> 2014년 주요 위법행위 조치내역 (2014년 2월 13일 기준)<sup>36)</sup>

위법주체	협 의	판정	제재내역	조치결과
Movement for Change	허가되지 않은 선거자금 수령 이후 미반환	위반	벌금 £5500	2.6 납부
Progress	허가되지 않은 선거자금 수령 이후 미반환	위반	벌금 £6000	2.6 납부
Anne-Marie Trevelyan	선거자금 수령 이후 30일 이내 통지의무 위반	위반	벌금 £200	1.25 납부
Society of Conservative Lawyers	선거자금 수령 이후 30일 이내 통지의무 위반	위반	제재 미부과	조사종료
Labour Women's Network	선거자금 수령 이후 30일 이내 통지의무 위반	위반	벌금 £350	1.13 납부
UK Champagne Socialist Party	2012년 회계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위반	제재 미부과 (정당 해체)	조사종료
The Respect Party	2012년 회계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미결정	해당없음 (회계 담당자 교체 등으로 인한 보고서 지연 착작)	조사종료

35) *Use of new investigatory powers and civil sanctions* (The Electoral Commission: July 2012), p. 2.

36) The Electoral Commission, *Information about closed cases* (13 February 2014).

## 6. 선거비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선거비용 규제와 관련한 영국 사회의 우려는 현재진행형임.
  - 법·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선거비용 지출 제한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종종 발견되고, 개별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지출 제한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됨.
-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 제한을 규정한 시점이 선거를 불과 5~6주 앞두고 효력을 발생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음.
  - 이는 규정된 시기가 아닌 시점에 상당한 양의 선거자금이 각 선거구에 유입되고 있으며 동 자금은 후보자 1인당 제한된 지출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됨.
- 선거비용 지출 제한 규정이 장기(long campaign)와 단기(short campaign)로 구분되어 있는 것 또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후보자 측에 혼란을 일으키는 요소임.
  - 2010년 총선의 경우 지출 보고서를 제출한 후보자 혹은 회계담당자 4,000명 가운데 1,000명이 넘는 인원이 동일한 선거를 위한 비용지출에 두 개의 지출 제한 규정이 적용됨으로 인해 보고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의도하지 않게 규정을 위반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함.
  - 그러나 현행 제도는 특별한 개선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2015년 5월 총선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임.<sup>37)</sup>

---

37) Oonagh Gay, *Election expenditure controls*, Parliamentary and Constitution Centre (SN/PC/04611), 28 August 2013, pp. 7-9.

- 선관위는 이에 대해 선거비용 지출을 규정하는 현행 제도를 단일 시기로 대체할 경우 후보자 및 각 후보별 회계담당자에게 부과되어 온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관련 당사자들의 의도하지 않은 규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sup>38)</sup>
- 선관위는 최근 내년 총선을 대비해 보다 실질적 선거비용 지출 제한 규정 마련을 위한 권고안을 제시함.
  - 동 권고안은 현행 7,150파운드(선거구별 유권자 1인당 추가 금액 제외한 기본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기 선거운동 기간 비용 지출 제한액을 47% 가량 인상된 10,550파운드로 상향 조정하고, 장기 선거운동 기간의 경우 「의회 고정임기법 2011 (Fixed-term Parliaments Act 2011)」 통과로 총선일자가 미리 정해진 점을 고려해 후보자의 평균 비용 지출액이 10% 가량 감소(£29,350→£26,450)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장기와 단기 선거운동 기간의 비용 지출 제한액의 동시 조정은 결과적으로 총선비용 지출 제한 범위를 4%(£1,600) 가량 상승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됨.<sup>39)</sup>

38) *A regulatory review of the UK's party and election finance laws: recommendations for change* (The Electoral Commission: June 2013).

39) *Candidate spending limit review: 2015 UK Parliamentary general elections and local government elections in England and Wales* (The Electoral Commission: March 2014).



프랑스 연구관 : 김청진

## 1. 선거비용(선거자금) 관계 법규

### (1) 관련 법규

가. 정당에 대한 정부지원금 관련 규정

- 프랑스는 정당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988년에 처음으로 「정치자금의 투명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선거비용을 규제하고 있음. 또한 1990년에는 법 개정을 통해서 정치자금 대리인 제도를 도입했음.

나. 선거 비용 관련 규정

- 선거비용(선거자금)은 「선거법(Code électorale)」 제 5bis절 ‘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L.52-4조 ~ L.52- 18조)’<sup>40)</sup>에 의해 규제받고 있음.

### (2) 법규 주요 내용

- 후보자는 정치자금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자연인(personne physique) 또는 단체·후원회(association)의 형태가 될 수 있음. 자연인인 경우

40) 「선거법」(Code électorale) - 제 5bis절 선거비용의 모금과 제한  
[http://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4740D8000EE0AC7870341F2B48F7F5D6.tpdjo02v\\_2?idSectionTA=LEGISCTA000006148459&cidTexte=LEGITEXT000006070239&dateTexte=2014061](http://legifrance.gouv.fr/affichCode.do;jsessionid=4740D8000EE0AC7870341F2B48F7F5D6.tpdjo02v_2?idSectionTA=LEGISCTA000006148459&cidTexte=LEGITEXT000006070239&dateTexte=2014061)

각 정당은 관할 경시청에 재정대리인(mandataire financier)을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으로 단체·후원회로 선정한 경우에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 (CNCCFP -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치자금대리인은 선거자금 명분으로 모금을 하며, 은행 혹은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여 선거를 위한 모든 지출을 집행함.
  - 각 선거 1차 투표 이후 열 번째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각 후보자 또는 1차 선거에서 제 1순위 명부 후보자(candidat tête de liste)는 회계보고서와 선거자금 소득 증명서 및 영수증, 견적서 및 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회계 보고서는 전문회계사 및 공인회계사들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함.

「선거법」 (Code électoral) (마지막 법안 개정 : 2014년 5월 30일)

제 5bis절 전기 비용의 모금과 제한

제 L52-4조

제52-5조 및 52-6조의 제 항에 따라서 선거에 있어서 모든 후보자는 늦어도 후보자 등록일까지 대리인(mandataire)을 선임한다. 이 대리인은 선거자금후원회 또는 재정대리인으로 지명된 개인이 될 수 있다. 이 대리인은 동시에 여러 후보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선거가 있는 달의 첫째일의 그 전 해 동안과 후보자 회계계좌 신고일까지 대리인은 선거자금의 명분으로 모금을 할 수 있다.

대리인은 정치단체나 정당이 관리하는 지출을 제외하고 투표 실시일 이전에 선거를 위해 예정된 지출을 집행한다. 후보자가 직접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서는 은행이나 우체국 계좌를 통해서 집행되었을 경우 대리인이 이를 보전한다.

조기 또는 보궐선거의 경우에 이 규정은 당해 선거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된다.

이 조의 규정은 인구 9,000명 미만인 캉통(canton)의 도의원 선거 및 인구 9,000명 미만인

코뮌(commune)의 기초의원 선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Article L52-4**

Tout candidat à une élection déclare un mandataire conformément aux articles L. 52-5 et L. 52-6 au plus tard à la date à laquelle sa candidature est enregistrée. Ce mandataire peut être une 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 ou une personne physique dénommée " le mandataire financier ". Un même mandataire ne peut être commun à plusieurs candidats.

Le mandataire recueille, pendant l'année précédant le premier jour du mois de l'élection et jusqu'à la date du dépôt du compte de campagne du candidat, les fonds destinés au financement de la campagne.

Il règle les dépenses engagées en vue de l'élection et antérieures à la date du tour de scrutin où elle a été acquise, à l'exception des dépenses prises en charge par un parti ou groupement politique. Les dépenses antérieures à sa désignation payées directement par le candidat ou à son profit font l'objet d'un remboursement par le mandataire et figurent dans son compte bancaire ou postal.

En cas d'élection anticipée ou partielle, ces dispositions ne sont applicables qu'à compter de l'événement qui rend cette élection nécessaire.

Les dispositions du présent article ne sont pas applicables à l'élection des conseillers généraux dans les cantons de moins de 9 000 habitants et à l'élection des conseillers municipaux dans les communes de moins de 9 000 habitants.

**제 L52-5조**

선거자금후원회(L'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는 단체협약에 관한 1901년 7월1일 법에서 규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후보자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자신을 후원하는 재정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 명부투표(le scrutin de liste)의 경우 이 명부의 모든 회원은 후보자를 지지하는 재정후원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없다. 선거운동본부의 회계를 담당하는 회계사는 선거 자금 후원회의 출납을 맡거나 회장이 될 수 없다.

선거자금 후원회는 모든 재정적 활동을 위해 우체국 또는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선거자금 후원회의 계좌는 해당 후보 선거운동 본부 계좌에 첨부되거나 선거자금 후원회가 후원하는 후보자가 후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제 1순위 명부 후보자 선거운동 본부의 계좌

에 첨부된다.

선거자금후원회는 제52-4조의 제항이 정한 기간 동안에만 선거 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거자금 후원회는 후원하는 후보자의 선거회계장부를 제출한 한 후 3월 안에 해체한다. 이 기간을 넘기기 전에 선거자금후원회는 후보자 자산에서 출연하지 않은 순 자산의 이관을 결정한다. 이러한 순자산은 정당이나 공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하나 또는 여러 기관에 이관되어야 한다. 위의 기간과 요건에 따른 이관 결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선거자금후원회가 거주하는 도의 도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검사는 지방 법원에 제소한다. 지방 법원은 순 자산에 대한 공적 수령인으로 알려진 특정 기관이나 몇몇 기관들을 선정한다. 이관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지방법원에 제소한다.

만약 선거자금 후원회로부터 후원받는 후보자가 입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선거자금 후원회는 후보자 기탁 기간 이후에 해체된다. 해체가 이루어질 3개월 안에 선거자금 후원회가 결정한 순자산의 이관은 제52-5조의 제항에서 정한 조건 하에서 이루어진다.

#### Article L52-5

L'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 doit être déclaré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par l'article 5 de la loi du 1er juillet 1901 relative au contrat d'association. La déclaration doit être accompagnée de l'accord écrit du candidat. Le candidat ne peut être membre de l'association de financement qui le soutient ; dans le cas d'un scrutin de liste, aucun membre de la liste ne peut être membre de l'association de financement qui soutient le candidat tête de la liste sur laquelle il figure. L'expert-comptable chargé de la présentation du compte de campagne ne peut exercer les fonctions de président ou de trésorier de cette association.

L'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 est tenue d'ouvrir un compte bancaire ou postal unique retraçant la totalité de ses opérations financières. Les comptes de l'association sont annexés au compte de campagne du candidat qu'elle a soutenu ou au compte de campagne du candidat tête de liste lorsque le candidat qu'elle a soutenu figure sur cette liste.

L'association ne peut recueillir de fonds que pendant la période prévue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52-4.

Elle est dissoute de plein droit trois mois après le dépôt du compte de campagne du

candidat qu'elle soutient. Avant l'expiration de ce délai, elle est tenue de se prononcer sur la dévolution de son actif net ne provenant pas de l'apport du candidat. Le solde doit être attribué, soit à une association de financement d'un parti politique, soit à un ou plusieurs établissements reconnus d'utilité publique. A défaut de décision de dévolution dans les conditions et délais prévus ci-dessus, à la demande du préfet du département dans lequel est situé le siège de l'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isit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qui détermine le ou les établissements reconnus d'utilité publique attributaires de l'actif net. Il en va de même dans le cas où la dévolution n'est pas acceptée.

Si le candidat soutenu par l'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 n'a pas déposé sa candidature, l'association est dissoute de plein droit à l'expiration du délai de dépôt des candidatures. La dévolution de l'actif net, sur laquelle l'association doit se prononcer dans les trois mois suivant la dissolution, s'effectu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à l'alinéa précédent.

#### 제 L52-6 조

후보자는 자신의 거주지의 도청(préfecture)에 선정한 재정대리인의 이름을 서면으로 신고한다. 신고 시에는 재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첨부한다. 선거운동본부의 회계를 관리하는 전문 회계사는 그 역할만을 수행한다. 명부 투표의 경우에 명부의 모든 후보자는 제 1순위 후원 후보명부에 등록된 후보자의 재정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재정대리인은 모든 재정적 활동을 알 수 있도록 은행 또는 우체국에 하나의 계좌를 개설한다. 무기명 계좌는 후보자가 지정한 재정 대리인의 신분에서 운영함을 명확히 밝힌다. 재정대리인의 계좌는 이를 계획한 후보자 선거 운동 본부의 계좌에 첨부되거나 이를 계획한 후보자가 제 1순위 후원명부에 등록된 경우, 제 1순위 후원 후보자 선거 운동 본부의 계좌에 부속된다.

재정대리인은 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재정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선택한 신용 기관의 모든 지불 수단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

선택한 기관 측에서 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재정대리인은 재정 대리인으로서 등록 요청을 받고 (관련) 서류를 수령한 다음 날부터 프랑스 국립 은행에 제소하여 선거구 혹은 선거구 근처 원하는 지점의 계좌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프랑스 국립 은행이 지정한 신용 기관에서 해당 계좌에 대한 해지 결정 통보는 사유를 적어서 재정대리인 및 프랑스 국립 은행에 서면으로 전달된다. 이때 재정대리인에게 최소 2달 전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한다. 계

좌가 해지된 경우, 재정대리인은 현 항에서 정의된 조건에 따라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할 권리를 가진다. 이 경우에, 차후에 만들어진 은행 계좌는 2절에서 정의한 은행 또는 우체국의 유일한 계좌 보유 의무에 사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법안에 대한 정확한 시행 형태는 행정령에 따른다. 이 법안에 대한 규제는 ‘건전성 및 청산 규제 기구’(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가 맡으며 「통화 및 금융법」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제 L612-31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따른다.

재정대리인의 계좌는 후보자 선거 자금 계좌 혹 명부 투표의 경우 명부 제1순의 후부의 선거자금 계좌에 부속된다.

재정대리인은 제52-4조의 제 2항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만 선거 기금을 모금할 수 있다.

재정 대리인의 직무는 그 직무를 위임한 후보자의 선거 운동 계좌를 제출한 다음 3월 이후 후보자가 법정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 기간이 경과된 후에 종료된다.

재정 대리인은 대리자로서 자신의 모든 활동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후보자에게 제출한다. 후보자 자산에서 출연하지 않으면서 흑자 결산이 발생했을 때에 그 결산금은 후보자의 결정에 따라 정당이나 공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하나 또는 여러 단체에 이관한다 이관 결정이 잘못 되었을 경우 후보자가 거주하는 도의 도지사의 요청으로 공화국 검사는 이 순자산을 공적 이용으로 이용할 기관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지방 법원에 소청한다. 이관이 수용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Article L52-6**

Le candidat déclare par écrit à la préfecture de son domicile le nom du mandataire financier qu'il choisit. La déclaration doit être accompagnée de l'accord exprès du mandataire désigné. L'expert-comptable chargé de la présentation du compte de campagne ne peut exercer cette fonction. Dans le cas d'un scrutin de liste, aucun membre de la liste ne peut être le madataire financier du candidat tête de la liste sur laquelle il figure.

Le mandataire financier est tenu d'ouvrir un compte bancaire ou postal unique retraçant la totalité de ses opérations financières. L'intitulé du compte précise que le titulaire agit en qualité de mandataire financier du candidat, nommément désigné.

Tout mandataire financier a droit à l'ouverture de ce compte, ainsi qu'à la mise à disposition des moyens de paiement nécessaires à son fonctionnement, dans l'établissement de crédit de son choix. L'ouverture de ce compte intervient sur

présentation d'une attestation sur l'honneur du mandataire qu'il ne dispose pas déjà d'un compte en tant que mandataire financier du candidat.

En cas de refus de la part de l'établissement choisi, le mandataire peut saisir la Banque de France afin qu'elle lui désigne un établissement de crédit situé dans la circonscription dans laquelle se déroule l'élection ou à proximité d'un autre lieu de son choix, dans un délai d'un jour ouvré à compter de la réception de la demande du mandataire et des pièces requises. Toute décision de clôture de compte à l'initiative de l'établissement de crédit désigné par la Banque de France doit faire l'objet d'une notification écrite et motivée adressée au mandataire et à la Banque de France pour information. Un délai minimal de deux mois doit être obligatoirement consenti au mandataire. En cas de clôture, le mandataire peut à nouveau exercer son droit au compte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présent article. Dans ce cas, l'existence de comptes successifs ne constitue pas une violation de l'obligation de disposer d'un compte bancaire ou postal unique prévue au deuxième alinéa. Les modalités de mise en œuvre de ce droit sont précisées par décret. Le contrôle du respect de ce droit est assuré par l'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et relève de la procédure prévue à l'article L. 612-31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Les comptes du mandataire sont annexés au compte de campagne du candidat qui l'a désigné ou au compte de campagne du candidat tête de liste lorsque le candidat qui l'a désigné figure sur cette liste.

Le mandataire financier ne peut recueillir de fonds que pendant la période prévue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52-4.

Les fonctions du mandataire financier cessent de plein droit trois mois après le dépôt du compte de campagne du candidat qui l'a mandaté, ou bien, si le candidat n'a pas déposé sa candidature dans les délais légaux, à l'expiration du délai de dépôt des candidatures.

Au terme de son mandat, le mandataire remet au candidat un bilan comptable de son activité. Lorsqu'un solde positif ne provenant pas de l'apport du candidat apparaît, il est dévolu, sur décision du candidat, soit à une association de financement d'un parti politique, soit à un ou plusieurs établissements reconnus d'utilité publique. A défaut de décision de dévolution dans les conditions et délais prévus ci-dessus, à la demande du préfet du département dans lequel est domicilié le candidat, le procureur de la

République saisit le président du tribunal de grande instance qui détermine le ou les établissements reconnus d'utilité publique attributaires de l'actif net. Il en va de même lorsque la dévolution n'est pas acceptée

**제 L52-7 조**

후보자는 동일한 선거에서 선거자금후원회와 재정대리인을 동시에 둘 수 없다.

그러나 후보자는 2명 또는 수명의 중개인(intermédiaire)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후보자는 지명 또는 동의부여와 동일한 절차로 재정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선거자금후원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여야 한다. 은행 또는 우체국계좌는 후보자가 새로운 재정대리인을 지명하거나 새로운 선거자금 후원회를 동의할 때까지 인출이 정지된다. 각 후보자 또는 재정대리인은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자금관리에 대한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은 후보자가 연기명투표(un scrutiny plurinominal)의 범위 내에서 1명 또는 여러 명의 후보자가 이미 동의한 후보자에 대하여 동의를 부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rticle L52-7**

Pour une même élection, un candidat ne peut recourir en même temps à une 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 et à un mandataire financier.

Il peut toutefois recourir successivement à deux ou plusieurs intermédiaires. Dans cette hypothèse, le candidat doit mettre fin aux fonctions du mandataire ou retirer son accord à l'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 dans les mêmes formes que la désignation ou l'attribution de l'accord. Le compte bancaire ou postal unique est bloqué jusqu'au moment où le candidat désigne un nouveau mandataire financier ou donne son accord à une nouvelle 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 Chaque association ou chaque mandataire financier, sauf le cas de décès de ce dernier, établit le compte de sa gestion.

Les dispositions de l'alinéa précédent ne sont pas applicables lorsque le candidat a donné son accord, dans le cadre d'un scrutin plurinominal, à une association à laquelle un ou plusieurs candidats avaient déjà donné leur accord.

**제 L52-8 조.**

1명 또는 여러 명의 후보자에게 선거운동 자금을 후원하기 위한 실명 확인된 개인에게 허가된 후원금은 한 선거에서 4,600유로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제외하고 법인은 어떤 형태로든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해 저렴한 물품·서비스 또는 다른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정후보자의 선거 운동 본부의 재정에 참여할 수 없다.

후보자에게 후원된 150유로 이상의 모든 성금은 수표·계좌이체·자동이체 은행 카드로 지불되어야 한다.

제52-11조에 근거하여 지출 총액이 15,000유로 이상인 경우 후보자에게 후원된 현금 총액은 합법적인 지출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어떠한 후보자도 타국가나 타국가 법에 근거한 법인(personne morale de droit étranger)의 국기업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물질적 도움이나 후원을받을 수 없다.

제52-1조의 제항의 특례로 후보자나 후보자명부는 제 항에서 규정한 후원을 요청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광고를 할 수 있다. 광고는 후원금에 대한 내용 이외의 어떠한 내용도 포함할 수 없다.

제 항에서 제시된 금액은 행정명령(décret)을 통해서 매년 갱신된다. 금액은 담배를 제외한 가계 소비 가격 인덱스와 같이 조정된다.

#### Article L52-8

Les dons consentis par une personne physique dûment identifiée pour le financement de la campagne d'un ou plusieurs candidats lors des mêmes élections ne peuvent excéder 4 600 euros.

Les personnes morales, à l'exception des partis ou groupements politiques, ne peuvent participer au financement de la campagne électorale d'un candidat, ni en lui consentant des dons sous quelque forme que ce soit, ni en lui fournissant des biens, services ou autres avantages directs ou indirects à des prix inférieurs à ceux qui sont habituellement pratiqués.

Tout don de plus de 150 euros consenti à un candidat en vue de sa campagne doit être versé par chèque, virement, prélèvement automatique ou carte bancaire.

Le montant global des dons en espèces faits au candidat ne peut excéder 20 % du montant des dépenses autorisées lorsque ce montant est égal ou supérieur à 15 000 euro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52-11.

Aucun candidat ne peut recevoi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our quelque dépense

que ce soit, des contributions ou aides matérielles d'un Etat étranger ou d'une personne morale de droit étranger.

Par dérogation au premier alinéa de l'article L. 52-1, les candidats ou les listes de candidats peuvent recourir à la publicité par voie de presse pour solliciter les dons autorisés par le présent article. La publicité ne peut contenir d'autres mentions que celles propres à permettre le versement du don.

Les montant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sont actualisés tous les ans par décret. Ils évoluent comme l'indice des prix à la consommation des ménages, hors tabac.

**제 L52-8-1조**

어떠한 후보도 직간접적으로 의원의 임기 수행과 관련하여 국회가 부담하는 수당이나 현물 급여를 사용할 수 없다.

**Article L52-8-1**

Aucun candidat ne peut utilis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les indemnités et les avantages en nature mis à disposition de leurs membres par l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pour couvrir les frais liés à l'exercice de leur mandat.

**제L52-9 조**

선거자금후원회나 재정대리인이 발급한, 특히 후원을 호소하기 위해 이용되었던 서류나 증명서(actes)에는 후보자, 모금된 성금의 후원 후보자명부 단체의 명칭, 단체의 설립 일자, 재정 대리인의 이름과 임명 날짜 등을 명시한다.

제항의 서류에는 후보자가 선거 자금 후원회 또는 재정 대리인에 의하여서만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제52-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Article L52-9**

Les actes et documents émanant d'une 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 ou d'un mandataire financier et destinés aux tiers, notamment ceux utilisés pour des appels à des dons, doivent indiquer le candidat ou la liste de candidats destinataires des sommes collectées ainsi que la dénomination de l'association et la date à laquelle elle a été déclarée ou le nom du mandataire financier et la date à laquelle il a été désigné. Ils doivent indiquer que le candidat ne peut recueillir de dons que par l'intermédiaire de ladite association ou dudit mandataire et reproduire les dispositions de l'article

précédent.

**제L52-10조**

선거자금 후원회나 재정 대리인은 최고행정법원의 명령으로 정한 단체 설립 및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후원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또한 실명 개인이 기부한 3,000유로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교부한 영수증에는 수령자인 후보자의 성명이나 후보자 명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도 최고행정법원 명령으로 정한다.

**Article L52-10**

L'association de financement électorale ou le mandataire financier délivre au donateur un reçu dont un décret en Conseil d'Etat fixe les conditions d'établissement et d'utilisation. Ce décret détermine également les modalités selon lesquelles les reçus délivrés pour les dons d'un montant égal ou inférieur à 3,000 euros consentis par les personnes physiques ne mentionnent pas le nom du ou des candidats bénéficiaires ou la dénomination de la liste bénéficiaire.

**제 L52-11 조**

제52-4조가 적용되는 선거의 경우에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선거비용 이외의 회계보고를 위하여 동조에 정한 기간 중 각 후보자 또는 후보자 명부에 의해 지출되는 선거 비용의 상한선을 설정한다.

선거비용의 상한선은 아래의 도표에 기준한 선거구의 주민 수에 따라 정한다:

하원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상한선은 각 후보자 당 38,000유로이다. 이 상한선은 선거구 주민 1인당 0.15유로씩 증액된다.

선거구의 인구수에 따른 구분	선거비용 상한선(주민 1인당) (유로)			
	기초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1차 투표시의 제출 명부	2차 투표시의 제출 명부		
15,000 명 이하	1.22	1.68	0.64	0.53
15,001~30,000	1.07	1.52	0.53	0.53
30,001~ 60,000	0.91	1.22	0.43	0.53
60,001~100,000	0.84	1.14	0.30	0.53
100,001~150,000	0.76	1.07	-	0.38
150,001~250,000	0.69	0.84	-	0.30
250,000 이상	0.53	0.76	-	0.23

광역의원(Conseiller régional) 선거의 선거 비용 상한선은 코르시카 하원 의원 선거에 적용할 수 있다.

선거비용 상한선은 행정명령(décret)에 의해서 매년 현실화된다. 선거비용 상한선은 담배를 제외한 가계 소비자 가격 인덱스에 근거하여 조정된다. 선거 상한선은 2012년 이후 균형 재정을 달성한 해부터 현실화 된다. 재정적자는 과대 재정적자 관련 절차의 의정서(protocol)의 적용에 관한 「유럽연합 회원국 구성에 관한 조약」(Traité instituant la Communauté européenne)에 부속된 2009년 5월 25일 n° 479/2009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CE) 제 3조 2항에서 규정된 조건으로 확인된다.

**Article L52-11**

Pour les élections auxquelles l'article L. 52-4 est applicable, il est institué un plafond des dépenses électorales (1), autres que les dépenses de propagande directement prises en charge par l'État, exposées par chaque candidat ou chaque liste de candidats, ou pour leur compte, au cours de la période mentionnée au même article.

Le montant du plafond est déterminé en fonction du nombre d'habitants de la circonscription d'élection, conformément au tableau ci-après :

Le plafond des dépenses pour l'élection des députés est de 38 000 euros par candidat. Il est majoré de 0,15 euro par habitant de la circonscription.

Les plafonds définis pour l'élection des conseillers régionaux sont applicables à

l'élection des conseillers à l'Assemblée de Corse.

Les montants prévus au présent article sont actualisés tous les ans par décret. Ils évoluent comme l'indice des prix à la consommation des ménages, hors tabac. Il n'est pas procédé à une telle actualisation à compter de 2012 et jusqu'à l'année au titre de laquelle le déficit public des administrations publiques est nul. Ce déficit est constaté dans les conditions prévues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3 du règlement (CE) n° 479/2009 du Conseil, du 25 mai 2009, relatif à l'application du protocole sur la procédure concernant les déficits excessifs annexé au traité instituant la Communauté européenne.

#### **제L52-11-1 조**

제52-4조가 적용되는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국가가 선거 비용 제한액의 47.5%를 보전한다. 보전액은 후보자의 개인자산에서 지불된 비용 총액과 선거운동 본부에서 기록된 비용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5%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후보자, 제 L52-11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후보자, 제 L52-12조 제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안에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에서 회계 장부가 거절된 경우 혹 상속 재산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보전하지 않는다.

선거 회계 장부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도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이러한 결정에 따라 부정 행위의 경중 및 횡수에 따라서 보전 금액은 줄어들 수 있다.

#### **Article L52-11-1**

Les dépenses électorales des candidats aux élections auxquelles l'article L. 52-4 est applicable font l'objet d'un remboursement forfaitaire de la part de l'Etat égal à 47,5 % de leur plafond de dépenses. Ce remboursement ne peut excéder le montant des dépenses réglées sur l'apport personnel des candidats et retracées dans leur compte de campagne.

Le remboursement forfaitaire n'est pas versé aux candidats qui ont obtenu moins de 5 % des suffrages exprimés au premier tour de scrutin, qui ne se sont pas conformés aux prescriptions de l'article L. 52-11, qui n'ont pas déposé leur compte de campagne dans le délai prévu au deuxième alinéa de l'article L. 52-12 ou dont le compte de campagne est rejeté pour d'autres motifs ou qui n'ont pas déposé leur déclaration de

situation patrimoniale, s'ils sont astreints à cette obligation.

Dans les cas où les irrégularités commises ne conduisent pas au rejet du compte, la décision concernant ce dernier peut réduire le montant du remboursement forfaitaire en fonction du nombre et de la gravité de ces irrégularités.

**제L52-12 조**

제52-11조에서 정한 상한금액을 준수한 각 후보자와 제 1순위 명부 후보자 또한 유효표의 적어도 1%를 획득한 후보자는 모든 선거 자금의 출처와 공식적인 선거 운동 본부의 비용 이외에 제52-4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에 선거를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의 실체를 증명할 계좌를 개설하여야한다. 「조세 일반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 200조에 규정된 방식에 근거하여, 동 법안 제 L52-8조에 따라 자연인(personnes physiques)의 기부를 받은 후보자 혹은 제 1순위 명부 후보자는 똑같은 의무를 가진다. 후보자의 소유 자산에서 직접 지불된 비용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혹은 후보자 지원을 위해서, 후보자의 동의에 따라 그 후보자를 후원하는 개인 혹은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의해 직접 제공된 비용은 후보자의 계좌에 계정된다.

늦어도 1차 투표일 이후의 10번째 금요일 18시 이전에 각 후보자 또는 1차 선거에서 제1순위 명부 후보자(candidat tête de liste)는 회계 보고서, 수입 증명서, 영수증, 견적서 및 후보나 선거 계좌를 위하여 지불되었거나 저당 잡힌 비용 총액을 결정하는 성격의 부차적인 모든 서류를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 국가 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에 신고한다. 회계 보고서는 전문회계사 및 공인회계사에 의해 완성된다. 전문 회계사 및 공인회. 선거 운동 계좌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소득 및 지출은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재정대리인은 소득 및 지불 부재 확인서를 작성한다. 「조세 일반법」 (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 200조에 규정된 방식에 근거하여 동 법안 제 L52-8조에 따라 자연인(personnes physiques)의 기부를 받지 않았거나, 유효 투표수 1%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 혹은 제1순위 명부 후보자는 이러한 확인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1차투표 이전에 정한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단지 1차 투표에만 출마한 후보자선거 계좌는 1차 투표일 이후에 사용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계정할 수 없다. 제52-4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의 건물 임대 가격은 선거 운동 본부의 비용에서 공제한다.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 국가위원회는 약식으로 선거운동 회계장부의 발행한다.

제 52-11조의 적용을 위해 해외 프랑수령의 각 도 내에서 행해지는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정당한 항공·항해·하천 운행 교통요금은 선거 비용 상한

선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2항의 예외로서 과테루프도, 귀양제도, 마르티니끄도, 레유니옹 도의 선거운동 회계 보고서는 도지사 또는 도지청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Article L52-12**

Chaque candidat ou candidat tête de liste soumis au plafonnement prévu à l'article L. 52-11 et qui a obtenu au moins 1 % des suffrages exprimés est tenu d'établir un compte de campagne retraçant, selon leur origine, l'ensemble des recettes perçues et, selon leur nature, l'ensemble des dépenses engagées ou effectuées en vue de l'élection, hors celles de la campagne officielle par lui-même ou pour son compte, au cours de la période mentionnée à l'article L. 52-4. La même obligation incombe au candidat ou au candidat tête de liste dès lors qu'il a bénéficié de dons de personnes physiques conformément à l'article L. 52-8 du présent code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200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Sont réputées faites pour son compte les dépenses exposées directement au profit du candidat et avec l'accord de celui-ci, par les personnes physiques qui lui apportent leur soutien, ainsi que par les partis et groupements politiques qui ont été créés en vue de lui apporter leur soutien ou qui lui apportent leur soutien. Le candidat estime et inclut, en recettes et en dépenses, les avantages directs ou indirects, les prestations de services et dons en nature dont il a bénéficié. Le compte de campagne doit être en équilibre ou excédentaire et ne peut présenter un déficit.

Au plus tard avant 18 heures le dixième vendredi suivant le premier tour de scrutin, chaque candidat ou candidat tête de liste présent au premier tour dépose à la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son compte de campagne et ses annexes accompagné des justificatifs de ses recettes ainsi que des factures, devis et autres documents de nature à établir le montant des dépenses payées ou engagées par le candidat ou pour son compte. Le compte de campagne est présenté par un membre de l'ordre des experts-comptables et des comptables agréés ; celui-ci met le compte de campagne en état d'examen et s'assure de la présence des pièces justificatives requises. Cette présentation n'est pas nécessaire lorsque aucune dépense ou recette ne figure au compte de campagne. Dans ce cas, le mandataire établit une attestation d'absence de dépense et de recette. Cette

présentation n'est pas non plus nécessaire lorsque le candidat ou la liste dont il est tête de liste a obtenu moins de 1 % des suffrages exprimés et qu'il n'a pas bénéficié de dons de personnes physiques selon les modalités prévues à l'article 200 du code général des impôts.

Sous réserve du règlement de dépenses engagées avant le premier tour de scrutin, le compte de campagne des candidats présents au seul premier tour ne peut retracer de dépenses postérieures à la date de celui-ci. La valeur vénale résiduelle des immobilisations éventuellement constituées au cours de la période mentionnée à l'article L. 52-4 doit être déduite des charges retracées dans le compte de campagne. La commission assure la publication des comptes de campagne dans une forme simplifiée.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L. 52-11, les frais de transport aérien, maritime et fluvial dûment justifiés, exposés par les candidats aux élections législatives, aux élections sénatoriales et aux élections régionales à l'intérieur de chacun des départements d'outre-mer, ne sont pas inclus dans le plafond des dépenses.

Par dérogation aux dispositions du deuxième alinéa, en Guadeloupe, en Guyane, en Martinique et à La Réunion, le compte de campagne peut également être déposé à la préfecture ou la sous-préfecture.

**제 L52-14조**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CNCCFP)로 명명하는 독립행정기구를 설립한다.

이 위원회는 명령(décret)에 의해서 5년 임기로 다음 각 호의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사무국의 의견조정 후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의 부의장의 제안으로 지명된 국사원 위원 또는 명예위원 3인
- 사무국의 의견조정 후 파기원 원장의 제안으로 지명된 판사 또는 파기원 명예판사 3인
- 지방회계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은 회계감사원(la Cour des comptes) 원장의 제안으로 지명된 회원 또는 회계감사원 명예회원 3인

위원회는 의장을 선출한다.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CNCCFP) 활동에 필요한 인력과 소요비용은 국가의 일반예산에서 편성한다.

규정된 비용의 통제 조직과 관련한 1922년 8월 10일 법의 규정들은 의회의 비용에는 적용될 수 없다.

위원회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기관들을 소집한다.

공무원으로서 또는 임시 계약직으로 위원회에 근무하는 자들은 자신의 직무 중에 알 수 있었던 일, 행위 및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활동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 모든 조사를 사법경찰관(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에 요청할 수 있다.

#### **Article L52-14**

Il est institué une autorité administrative indépendante dénommée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Cette commission comprend neuf membres nommés, pour cinq ans, par décret :

- trois membres ou membres honoraires du Conseil d'Etat, désignés sur proposition du vice-président du Conseil d'Etat, après avis du bureau ;
- trois membres ou membres honoraires de la Cour de cassation, désignés sur proposition d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 cassation, après avis du bureau ;
- trois membres ou membres honoraires de la Cour des comptes, désignés sur proposition du premier président de la Cour des comptes, après avis des présidents de chambres.

Elle élit son président.

Les crédits et les emplois nécessaires au fonctionnement de la Commission nationale des comptes de campagne et des financements politiques sont inscrits au budget général de l'Etat.

Les dispositions de la loi du 10 août 1922 relative à l'organisation du contrôle des dépenses engagées ne sont pas applicables aux dépenses de la commission.

La commission peut recruter des agents contractuels pour les besoins de son fonctionnement.

Les personnels des services de la commission, qu'ils soient fonctionnaires ou contractuels, sont tenus au secret professionnel pour les faits, actes et renseignements dont ils ont pu avoir connaissance en raison de leurs fonctions.

La commission peut demander à des 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 de procéder à toute investigation qu'elle juge nécessaire pour l'exercice de sa mission.

## 2. 선거비용의 수입방법<sup>41)</sup>

### (1) 선거비용 확보 방법

- 프랑스에서 선거비용은 정당기부금, 후보자 개인자금 및 정치 후원금에 의해 조달됨.
- 정당지원금에 대한 제재는 없으나, 전체 선거비용에 대한 법정 한도가 존재함.

### (2) 수입의 범위

- 수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는 각 후보자는 선거비용 상한액을 존중해야 함.
  - 선거자금 후원회는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 측에 선거회계장부를 제출한 후 3월 안에 해체하며, 후보자 자산에서 출연하지 않은 순자산을 이관해야 함. 이때 순자산은 정당이나 공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하나 또는 여러 기관에 이관되어야 함.

## 3. 선거비용의 지출 범위

### (1) 선거비용 지출 방법

- 각 후보자는 재정 대리인(mandataire financier) 혹은 자금협회(association de financement)를 선거자금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함.

41) 전반적인 프랑스 정치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해서는 해외통신원 보고서 김청진, '2013년-2호 : 정치자금 조달 방안 및 투명성 확보'를 참조할 것.

이 대리인을 통해서만 선거자금 명분으로 모금을 할 수 있으며, 은행 또는 우체국 통장을 개설하여 선거를 위한 지출을 집행할 수 있음.

## (2) 지출의 범위

### 가. 대통령 선거

- 2012년 대선에서 선거비용 상한액은 후보당 16,851,000 유로였음. 단, 2차 투표까지 진출한 후보의 경우 상한액이 후보당 22,509,000 유로로 증액됨. 선거비용 상한액은 매년마다 명령(décret)에 의해서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의 소비자 물가 지수(담배 가격 제외)에 기초해 현실화됨. 42)
- 국가는 대선 1차 투표에서 5% 이상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제한액의 47%를 보전함.

### 나. 하원의원선거 / 지방의원선거

- 2012년 하원의원 기준 선거비용 상한액은 후보자 당 38,425 유로이고, 선거구 주민 1명당 0.15 유로씩 증액되었음. 하원의원 선거비용 상한액은 매년마다 행정명령을 통해 소비자 물가 지수(담배 가격 제외)에 기초해 현실화 됨.
- 하원의원선거 및 지방의원선거의 선거비용은 국가가 선거비용 제한액의 47.5%를 보전함. 다만,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5% 이상

42) 1962년 11월 6일 보통선거에 의한 공화국 대통령 선거에 관한 n°.62-1292 법안 (Loi n°62-1292 du 6 novembre 1962 relative à l'élection du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au suffrage universel)  
<http://www.legifrance.gouv.fr/affichTexte.do?cidTexte=LEGITEXT000006068219>

을 획득하지 못한 경우, 규정된 기간 안에 선거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계 장부가 거절된 경우 혹 상속 재산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후보자에게는 보전하지 않음.

- 지방의원 선거 비용 상한액은 아래의 표와 같이 선거구의 주민수에 따라 정해지며 행정명령에 소비자 물가에 연동하여 매년 현실화됨.

<지방의원 선거 비용 상한액 산정 기준>

선거구의 인구수에 따른 구분 (단위: 명)	선거비용의 주민 1인당 상한액 (단위: 유로 Euro)			
	기초의원 선거		중역의원 선거	광역의원 선거
	1차투표	2차투표		
15,000 명 이하	1.22	1.68	0.64	0.53
15,001 ~ 30,000	1.07	1.52	0.53	0.53
30,001 ~ 60,000	0.91	1.22	0.43	0.53
60,001 ~ 100,000	0.84	1.14	0.30	0.53
100,001 ~ 150,000	0.76	1.07	-	0.38
150,001 ~ 250,000	0.69	0.84	-	0.30
250,000 명 이상	0.53	0.76	-	0.23

#### 4. 선거비용에 관한 통제과 검증

##### (1) 선거비용의 수입의 제한

-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제외하고 법인은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직간접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없음. 타국가나 타국가 법에 근거한 법인 (personne morale de droit étranger)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물질적 도움이나 후원을 받을 수 없다.

- 한 선거에서 개인은 후보자 또는 복수 후보자에게 최대 4,600유로의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있음.
- 모든 기부금은 후보자의 선거회계나 소속 정당 선거회계에 기입되어야 하며, 150유로 이상의 후원금은 반드시 수표·계좌이체·자동이체 은행카드로 지불되어야 함. 지출 총액이 15,000유로 이상인 경우 후보자에게 후원된 현금 총액은 합법적인 지출 총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2)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금지

- 선거비용 보전을 받기 위해서 각 후보자는 재정 대리인(mandataire financier) 또는 선거자금후원회(association de financement)를 선거자금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법정 선거 비용 상한액을 존중해야함.

## (3) 회계보고서의 제출과 자금의 공개 43)

- 각 선거 1차 투표 이후 열 번째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각 후보자 또는 1차 선거에서 제1순위명부후보자(candidat tête de liste)는 회계보고서와 선거자금 소득 증명서 및 영수증, 견적서 및 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 회계 보고서는 전문회계사들에 의해 승인 받아야 함.

---

43) 회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선관위 해외통신원 보고서 김청진, '2012년-3호 : '정당, 정치인, 후원회의 회계 보고 및 공개'를 참조할 것.

-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제출 방법은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sup>44)</sup>에서 제시한 ‘선거 회계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용 정보 안내 (Notice d’information pratique pour remplir le compte de campagne)’<sup>45)</sup> 및 ‘후보자 및 대리인을 위한 안내」(Guide du candidat et du mandataire’<sup>46)</sup>에 따름.
-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는 관보를 통해 선거비용 회계 보고서를 공개하며, 공개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① 후보자 이름
  - ② 총 지출 / 총 수입 및 수입 내역 / 결산 금액
  - ③ 이행 금액 총액 (정치자금 후원회를 통해 이행된 금액)
  - ④ 국가에 의한 선거비용 보전금액
  - ⑤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 회계보고서 감사 의견
- 또한 제3자는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원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이때 공개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이 원칙은 정당의 회계 보고서 공개, 대선 선거자금 보고서 공개에 있어서도 적용됨)
  - ①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의 1~4페이지 (단, 후보자, 자금대리인, 정치자금 후원회 대표의 신상 정보는 제외)
  - ② 모든 지출 증빙 서류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
  - ③ 정당의 기여금 내역 (단,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 및 후보 개인 지참금 등 이와 관련된 증빙 서류는 공개되지 않음)

44)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 - 대선 및 보궐 선거를 제외한 차기 전국 선거 후보자의 선거회계에 적용되는 문서<http://www.cncfcf.fr/index.php?art=732>

45) [http://www.cncfcf.fr/docs/campagne/cncfcf\\_2014\\_compte\\_de\\_campagne\\_notice\\_v20140113.pdf](http://www.cncfcf.fr/docs/campagne/cncfcf_2014_compte_de_campagne_notice_v20140113.pdf)

46) [http://www.cncfcf.fr/docs/campagne/cncfcf\\_2013\\_Guide\\_candidat\\_et\\_mandataire\\_20131220.pdf](http://www.cncfcf.fr/docs/campagne/cncfcf_2013_Guide_candidat_et_mandataire_20131220.pdf)

## 5. 조사기관의 현황과 조사 권한<sup>47)</sup>

### (1) 조사기관 현황

- 프랑스에서는 선거법 위반 수사 주체가 선거 종류에 따라 달라짐.
  - 전국 선거 (대통령 선거, 상·하원 선거 및 국민 투표)의 경우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가 수사 주체이며, 지방선거의 경우 행정재판소(tribunat administratif) 또는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이 선거법(선거비용) 위법행위 수사를 진행함.
- 선거자금 조사에 있어서 1차 조사기관으로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함.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는 선거회계장부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없는지 확인함.

### (2) 조사권한

#### 가. 전국 선거

- 「헌법」 제58조에 따라 대통령선거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선거에 관한 이의를 심사하는 선거판사(juge électorale)로서 수사 권한을 가짐.
- 하원 및 상원의원 선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조직 법률에 관한 1958년 11월 7일 n° 58-1067 명령(Ordonnance n° 58-1067 du 7 novembre 1958 portant loi organique sur le Conseil constitutionnel)」 제42조는 헌법재판소[및 지정재판부(section) - 헌

---

47) 선거법 위반 조사 기관에 관해서는 선관위 해외통신원 보고서 김청진, '2012년-5호 : '선거법 위반 및 불법정치자금 조사'를 참조할 것.

법위원 3명으로 구성됨]<sup>48)</sup>가 필요한 경우 수사(enquête)를 지시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문서 및 결정사항(「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 등)을 참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헌법재판소의 조직 법률에 관한 1958년 11월 7일 n° 58-1067 명령」 제 41-1조에 근거하여 헌법재판소는 「선거법」 LO 136-1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견되면 당선자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
- 「헌법재판소 조직 법률에 관한 1958년 11월 7일 n° 58-1067 명령」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필요한 경우 예심(instruction) 및 수사(enquête)를 진행할 수 있음.

#### 나. 지방선거

- 기초의회의원 선거 경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수사권은 행정재판소 (tribunat administratif) 및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에게 있음. 광역의회선거 및 유럽의회선거의 경우 최고행정법원이 관할함.
- 예심판사(juge d'instruction)은 모든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이 때 예심 판사는 직접 예심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수사위임(commission rogatoire)를 통해 사법경찰관(officiers de police judiciaire)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이 일반적임. 위임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위임 범위 안에서 예심판사의 모든 권한(심문, 수색·압수, 확인, 보호유치, 전화 감청,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음.

48) 헌법재판소는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9년으로 매 3년마다 3인씩 교체됨.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이 각 3인씩 임명하며, 헌법재판소 의장은 헌법위원들 중에서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됨. 헌법 위원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 3개가 독립적으로 헌법재판소 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3) 회계보고서 등 검증 방법

-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회계보고서는 반드시 회계전문가에 의해 승인되어야함.
- 각 선거 1차 투표 이후 열 번째 금요일 18시 이전까지 각 후보자 또는 1차 선거에서 제1순위명부후보자(candidat tête de liste)는 회계보고서와 선거자금 소득 증명서 및 영수증, 견적서 및 지불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를 첨부하여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 위원회」에 제출함.
-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위원회」가 1차적으로 선거회계 보고서를 검사하게 되며, 거절 결정한 선거회계보고서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게 됨.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 위원회」는 독립적인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형사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법 당국에 소송을 요청해야함.

### (4) 선거비용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문제가 있는 경우 후보자는 다음 중 세 가지 제재를 받게 됨.
  - 1) 금전적 제재 :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국가 위원회」는 선거비용 보전 금액의 삭감을 결정할 수 있음.
  - 2) 벌금형 제재 : 관련 법령에 의한 벌금 부과
  - 3) 선거형 제재 : 의원직 박탈 및 피선거권 박탈

## 6. 선거비용규제 평가

- 프랑스는 현금 모금 제한, 150유로 이상 현금 기부 금지, 정당을 제외한 모든 법인의 정치 자금 후원 금지, 정치자금·선거비용 공개, 재정 대리인을 통한 지출 통제, 외부 회계 전문가에 의한 감사 등의 제도적 보완을 추구하였음.
- 이런 노력들은 선거비용의 투명한 수입과 지출에 기여하여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일본

일본 연구관 : 신여림

## 1. 선거비용(선거자금) 관계 법규

### (1) 관련 법규 현황

- 선거비용 관련 법규로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 시행령」, 「정치자금규정법」, 「국회의원선거 등 집행경비기준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2) 법규별 주요내용

-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시행령은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수입 및 지출, 그 회계보고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정치자금규정법은 선거운동비용을 포함한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액수, 모집방법 등에 대한 규정과 정치자금 심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국회의원선거 등 집행경비기준에 관한 법률’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의 경비를 규정함.

## 2. 선거비용의 수입범위

### (1) 선거비용 확보방법

#### 가. 정부지원금<sup>49)</sup>

- 선거운동비용 공비부담(選舉運動費用の公費負担)제도가 시행중임.
  - 입후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산에 관계없이 공평한 입후보 및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 정부지원금은 「공직선거법」 제263조, 제264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국회의원선거 등 집행경비기준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의해 규정됨.
- 선거의 종류에 따라 지원 금액 및 범위 등이 다르나, 주로 선거운동 관련 포스터 및 선전물의 제작, 발송, 차량운행에 관련한 비용이 지원됨.
-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일정한 선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후보가 업체와 계약,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지방공공단체가 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임.
- 투표결과 일정득표수(供託物沒收点)를 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음<sup>50)</sup>.

#### 나. 비정부지원금(개인, 단체 등)

- 단체로부터의 기부
  -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그 외 정치단체가 공직후보자에게 하는 기부 금액에는 제한이 없음.

49) 관련 법조항의 원문 및 번역은 첨부 1

50) 공탁물몰수점(供託物沒收点)을 넘지 못하면 공비부담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 함. 오카야마켄 비젠시 홈페이지 참고 <http://www.city.bizen.okayama.jp/busyo/shiminseikatu/senkyo/mamechishiki2.html>

- 회사, 노동조합, 그 외의 단체로부터 공직후보자는 기부를 받을 수 없음.

○ 개인으로부터의 기부

- 선거운동 관련 비용에 한해서, 공직후보자 개인에게 기부할 수 있음.
- 개인이 공직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총액은 1,000만엔, 한 후보자에게 할 수 있는 개별 총액은 150만엔임.

(2) 수입의 범위

-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선거운동활동의 ‘수입’은 금전, 물품 외의 재산상의 이익, 수수, 승낙 및 약속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공직후보자가 받거나 하는 기부에 있어서 역시 공여 및 교부의 약속을 포함하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 179조

이 법률에 있어서 ‘수입’이란, 금전, 물품, 그 외의 재산상의 이익의 수수, 그 수수의 승낙 또는 약속을 말한다.

2 . 이 법률에 있어서 ‘기부’는 금전, 물품, 또는 그 외의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또는 교부, 그 외 공여 또는 교부의 약속으로 당비, 회비, 또는 그 외 채무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한다.

第179條

この法律において「収入」とは、金銭、物品その他の財産上の利益の收受、その收受の承諾又は約束をいう。

2 この法律において「寄附」とは、金銭、物品その他の財産上の利益の供与又は交付、その供与又は交付の約束で党費、會費その他債務の履行としてなされるもの以外のものをいう。

### 3. 선거비용의 지출범위

#### (1) 선거비용 지출방법

- 입후보자는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는 ‘출납책임자’를 선임해서 선거 운동에 관련한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기록할 의무가 있음.
  - 후보자 본인이 하거나 신고 정당 등이 후보자의 동의를 얻어 선임할 수 있음.
-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지출은 출납책임자를 통해 혹은 그 승낙을 얻어야 가능함.

#### (2) 지출의 범위

- 공직선거법상의 지출은 금전,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교부를 말하며, 금전이나 물품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에는 화환, 공화 및 향전 등을 포함함.

「공직선거법」

197조

3. 이 법률에 있어서 ‘지출’은 금전, 물품 또는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의 공여 또는 교부, 그 외 공여 또는 교부의 약속을 말함.

4. 제 3항의 금전, 물품 또는 그 외 재산상의 이익에는 화환, 공화, 향전(부의) 또는 예의로써 공여된 또는 교부된 것 그 외 이것들과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197條

3 この法律において「支出」とは、金銭、物品その他の財産上の利益の供与又は交付、その供与又は交付の約束をいう。

4 前3項の金銭、物品その他の財産上の利益には、花輪、供花、香典又は祝儀として供与され、又は交付されるものその他これらに類するものを含むものとする。

- 공직후보자 및 그 후원단체가 선거구에 대하여 하는 기부는 금지하고 있음(공직선거법 제 199조의 2).
- 선거운동에 관한 실비변상 및 보수규정을 두고 있음 (공직선거법 제 197조의 2<sup>51)</sup>).
  - 각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1일 50명 이내 선거운동에 종사자 및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노동자대해 보수를 지불할 수 있음.(중의원비례대표 선거 제외)

「공직선거법」

199조의 2 직후보자 또는 공직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공직에 있는 자를 포함.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공직후보자 등’이라고 함)는, 해당선거구(선거구가 없는 경우에는 선거가 행해지는 구역 이하 이 조에 있어서 동일)내에 있는 자에 대해서, 어떠한 명의를 가졌는지를 불문하고 기부를 해서는 안 된다. 단 정당 그 회의 정치단체 혹은 그 지부 또는 해당 공직후보자 등의 친족에 대해서 하는 경우 및 해당공직후보자 등이 오로지 정치상의 주의 또는 시책을 보급하기 위해 행해지는 강습회 그 외의 정치교육을 위한 집회(참가자에 대해 향응집대(통상 이루어지는 정도의 식사 제공을 제외)가 행해지는 것, 해당선거구 외에 있어서 행해지는 것 및 제 199조의 5 제 4항 각 호의 구분에 의해 해당 선거마다 해당 각 호에 정해진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 이하 이 항에 있어서 동일)에 관해 반드시 필요한 실비의 보상(식사에 대한 실비보상을 제외 이하 이 조에 있어서 동일)으로써 하는 경우는 이것에 제한되지 않는다.

199條の2 公職の候補者又は公職の候補者となろうとする者(公職にある者を含む。以下この條において「公職の候補者等」という。)は、当該選挙区(選挙区がないときは選挙の行われる区域。以下この條において同じ。)内にある者に對し、いかなる名義をもつてするを問わず、寄附を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若しくはその支部又は当該公職の候補者等の親族に對してする場合及び当該公職の候補者等が専ら政治上の主義又は施策を普及するために行う講習會その他の政治教育のための集會(參加者に對して響應接待(通常用いられる程度の食事の提供を除く。))が行われるようなもの、当該選挙区外におい

51) 법조항의 원문 및 번역은 첨부 2

て行われるもの及び第199條の5第4項各号の區分による当該選舉ごとに当該各号に定める期間内に行われるものを除く。以下この條において同じ。)に關し必要やむを得ない實費の補償(食事についての實費の補償を除く。以下この條において同じ。)としてする場合は、この限りでない。

- 선거운동용 자동차의 운행 및 수화통역, 단순사무·작업에 필요한 인력 등으로 선전물의 배포 등 후보자 지지에 관련한 노동력에 대한 보수 지급은 금지하고 있음.
- 해당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가 된 노동자만 보수를 받는 것이 가능함.
- 다음은 선거운동비용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비용임.

「공직선거법」

제 197조 다음의 지출은 선거운동에 관한 지출이 아닌 것으로 간주한다.

- 1) 입후보준비를 위해 필요한 지출로써 공직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가 된 자가 지출한 것 또는 그 자의 의사를 통해 지출한 것 이외의 것
- 2) 제 86조 제 1항부터 제 3항 까지 혹은 제 8항, 제 86조의 3 제 1항 혹은 동조 제 2항에 있어서 준용한 제 86조의 2 제 9항 전단 또는 제 86조의 4 제 1항, 제 2항, 제5항 제 6항 또는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후, 공직 후보자 또는 출납책임자와 의사를 통한 지출 이외의 것
- 3) 후보자가 이용한 차량, 선박 등에 필요한 지출
- 4) 선거 기일 후에 있어서 선거운동 잔무정리를 위해 필요한 지출
- 5) 선거운동에 관한 지불하는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조세 또는 수수료
- 6) 후보자등록 정당이 행하는 선거운동(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당선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행하는 것을 제외)또는 참의원명부신고 정당 등이 행하는 선거운동(참의원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이외의 선거에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을 위해 필요한 지출
- 7) 제 201조의 4 또는 제 14장의 3의 규정에 의해 정당 그 외의 정치단체가 행하는 선거운동을 위해 필요한 지출

2. 제 141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 및 선박의 사용을 위해 필요한 지출도, 전항과 동일

第197條 次に掲げる支出は、選挙運動に関する支出でないものとみなす。

- 一 立候補準備のために要した支出で、公職の候補者若しくは出納責任者となつた者のした支出又はその者と意思を通じてした支出以外のもの
- 二 第86條第1項から第3項まで若しくは第8項、第86條の3第1項若しくは同條第2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86條の2第9項前段又は第86條の4第1項、第2項、第5項、第6項若しくは第8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あつた後公職の候補者又は出納責任者と意思を通じてした支出以外のもの
- 三 公職の候補者が乗用する船車馬等のために要した支出
- 四 選挙の期日後において選挙運動の残務整理のために要した支出
- 五 選挙運動に關し支拂う國又は地方公共団体の租税又は手数料
- 六 候補者届出政党が行う選挙運動（専ら衆議院小選挙区選出議員の選挙以外の選挙において行うものを除く。）又は参議院名簿届出政党等が行う選挙運動（専ら参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挙以外の選挙において行うものを除く。）のために要した支出
- 七 第201條の4又は第14章の3の規定により政党その他の政治団体が行う選挙運動のために要した支出

#### 4. 선거비용에 관한 통제과 검증(제한·금지행위)

##### (1) 선거비용의 수입의 제한<sup>52)</sup>

- 정치자금규정법은 회사, 노동조합 등의 단체는 공직후보자에게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정치자금규정법 제21조).
- 개인으로부터의 기부도 아래와 같이 제한함.
  - 공직후보가 1명의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기부액은 연간 150만엔 이내로 제한됨.
  - 개인이 하는 공직후보자 대한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되어 있으나 선거자금은 예외이며, 개인 유산에 의한 기부는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

52) 도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enkyo.metro.tokyo.jp/shikin/pdf/5-1.pdf>

음(정치자금규정법 제 22조 2, 3).

- 외국인, 외국법인으로부터 기부는 받을 수 없음(정치자금규정법 제22조의 5).
- 후보자의 출납책임자 등록 전에는 어떠한 기부를 받을 수도 할 수도 없음.(공직선거법 184조)

「정치자금규정법」

제21조 회사, 노동조합(노동조합법(쇼와24년 법률제 174호)제 2조에 규정하는 노동조합을 말함. 제 3항 및 제 21조의 제3 제 1항 및 제2항에 있어서도 동일), 직원단체(국가공무원법(쇼와22년 법률 제 120호)제 108조의 2 또는 지방공무원법(쇼와25년 법률 제 281호)제 52조에 규정한 직원단체를 말함. 제3항 및 제 21조의 3 제 1항 및 제2항에 있어서 동일), 그 외 단체는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정치 활동에 관한 기부를 할 수 없다.

제 21조의 2 어떠한 자도, 공직후보자의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제외)에 관해 기부(금전 등에 의한 것으로 제한, 정치단체에 대한 것은 제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22조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이외의 정치단체가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는 각 연중에 있어서 정당 및 정치단체이외의 동일 정치단체에 대해서는 5천5백만 엔을 넘는 것은 할 수 없다.

2 개인이 하는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는 각 연중, 정당 및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동일한 자에 대해서는 150만 엔을 넘는 것은 할 수 없다.

3. 전 항의 규정은 자금관리단체가 신고한 공직 후보자가 해당 자금관리단체에 대해 하는 기부 및 유산에 의한 기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22조의 5 어떤 자도 외국인, 외국인 법인 또는 그 주요한 구성원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단체 그 외의 조직(금융상품거래법 및 회사법에 의한 정의 생략)으로부터 정치활동에 관한 기부를 받으면 안 된다

第二十一條 會社、勞働組合（勞働組合法（昭和二十四年法律第七十四号）第二條 に規

定する労働組合をいう。第三項並びに第二十一條の三第一項及び第二項において同じ。)、職員団体(國家公務員法(昭和二十二年法律第二百十号)第八條の二又は地方公務員法(昭和三十五年法律第二百六十一号)第五十二條に規定する職員団体をいう。第三項並びに第二十一條の三第一項及び第二項において同じ。)その他の団体は、政党及び政治資金団体以外の者に對しては、政治活動に關する寄附を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一條の二 何人も、公職の候補者の政治活動(選挙運動を除く。)に關して寄附(金銭等によるものに限るものとし、政治団体に對するものを除く。)をしてはならない。

第二十二條 政党及び政治資金団体以外の政治団体のする政治活動に關する寄附は、各年中において、政党及び政治資金団体以外の同一の政治団体に對しては、五千万円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2 個人のする政治活動に關する寄附は、各年中において、政党及び政治資金団体以外の同一の者に對しては、百五十万円を超えることができない。

3 前項の規定は、資金管理団体の届出をした公職の候補者が当該資金管理団体に對してする寄附及び遺贈によつてする寄附については、適用しない。

第二十二條の五 何人も、外國人、外國法人又はその主たる構成員が外國人若しくは外國法人である団体その他の組織(金融商品取引法第二條第十六項に規定する金融商品取引所(以下この項において單に「金融商品取引所」という。))に上場されている株式を發行している株式會社のうち定時株主總會において議決權を行使することができる者を定めるための會社法(平成十七年法律第八十六号)第二百二十四條第一項に規定する基準日(以下この項において「定時株主總會基準日」という。)を定めた株式會社であつて直近の定時株主總會基準日が一年以内にあつたものにあつては、当該定時株主總會基準日において外國人又は外國法人が發行済株式の總數の過半數に当たる株式を保有していたものから、政治活動に關する寄附を受けてはならない。(이하생략)

「공직선거법」

제 184조 출납책임자(출납책임자를 대신해 그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 제 190조의 규정

을 제외, 이하 동일)는, 제 180조 제 3항 및 제 4항, 제 182조 또는 제 183조 제 3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된 후가 아니면, 공직 후보자의 추천, 지지자 등은 반대 또는 그 외의 운동을 위해서, 어떠한 명의를 갖는지를 불문하고, 공직 후보자를 위해 기부를 받거나 또는 지출할 수 없다.

第184條 出納責任者（出納責任者に代わつてその職務を行う者を含む。第190條の規定を除き、以下同じ。）は、第180條第3項及び第4項、第182條又は第183條第3項及び第4項の規定による届出がされた後でなければ、公職の候補者の推薦、支持又は反対その他の運動のために、いかなる名義をもつてするを問わず、公職の候補者のために寄附を受け又は支出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 (2)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금지

-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각 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운동비용 제한액은 [표1]과 같음. (공직선거법 194조의 1, 공직선거시행령 127조의 1에 기준)

선거명	제한액
중의원(소선거구)	명부등록자수×15엔에 1910만 엔을 더한 금액
참의원(선거구)	(정수2인의 경우) 명부등록자수÷정수×13엔 에 2370만 엔을 더한 금액
	(정수가 4인 이상인 경우) 명부등록자수÷정수 ×20엔에 2370만 엔을 더한 금액
참의원(비례대표)	5200만 엔
도도부현지사	명부등록자수×7엔에 2320만 엔을 더한 금액
도도부현의회	명부등록자수÷정수×83엔에 390만 엔을 더한 금액
지정도시의 의회	명부등록자수÷정수×149엔에 370만 엔을 더한 금액

지정도시의 장	명부등록자수 ×7엔에 1450엔을 더한 금액
지정도시이외의 시의회	명부등록자수 ÷정수×501엔에 220만 엔을 더한 금액
지정도시이외의 시장	명부등록자수 ×81엔에 310만 엔을 더한 금액
정촌의 의회의 의원	명부등록자수 ÷정수×1120엔에 90만 엔을 더한 금액
정촌 장	명부등록자수×110엔에 130만 엔을 더한 금

※ 명부등록자는 투표구내 선거인명부등록자, 정수는 선거구에 있어서 의원의 정수를 의미함.

### (3) 회계보고서의 제출과 자금의 공개

#### ○ 출납책임자의 선임

- 출납책임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역할로 공직후보자는 반드시 출납책임자를 선임·신고해야함.
- 출납책임자는 선거운동비용과 관련하여 선임된 출납책임자는 선거운동과 관련한 모든 수입·지출에 관해 기록하고, 영수증 등 수입·지출을 증명하는 서면을 보관해야 함.

#### ○ 출납책임자는 선거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보고서(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 선거기일 후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에 수입 또는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 수입 및 지출일 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을 공표함.

「공직선거법」

(선거운동에 관한 수입 및 지출의 보고서의 제출)

제 189조 출납책임자는 공직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해 이루어진 기부 및 그 외 수입, 지출

에 대해서는 제 185조 제 1항 각 호에 기재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전 항 각 1항의 영수증 그 외 지출을 증명하는 서면을 복사(동항의 영수증 그 외 지출을 증명하는 서면을 징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이유 및 해당 지출금액, 연월일, 목적을 기재한 서면 또는 해당 지출의 목적을 기재한 서면 및 금융기관이 작성한 불입 명세서로써 해당 지출 금액 및 연월일을 기재한 복사)를 첨부해서, 다음 각 호의 정한 대호 해당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1) 해당 선거의 기일 공포 또는 고시일 전 까지, 선거 기일 또는 고시일 부터 선거의 기일까지 또는 선거 기일 경과 후에 이루어진 기부 및 소외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이것을 함께 정산해서 선거 기일부터 15일 이내에
- 2) 전 각호의 정산신고 후에 이루어진 기부 및 그 외 수입, 지출에 대해서는 그 기부 및 그 외 수입, 지출이 이루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 3) 제 1항의 보고서에는 사실을 기재할 것을 맹세하는 문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選舉運動に關する收入及び支出の報告書の提出)

第189條 出納責任者は、公職の候補者の選舉運動に關しなされた寄附及びその他の收入並びに支出について、第185條第1項各号に掲げる事項を記載した報告書を、前條第1項の領收書その他の支出を証すべき書面の寫し(同項の領收書その他の支出を証すべき書面を徴し難い事情があつたときは、その旨並びに当該支出の金額、年月日及び目的を記載した書面又は当該支出の目的を記載した書面並びに金融機關が作成した振込みの明細書であつて当該支出の金額及び年月日を記載したものの寫し)を添付して、次の各号の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選舉に關する事務を管理する選舉管理委員會(參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舉については、中央選舉管理會)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一 当該選舉の期日の公示又は告示の日前まで、選舉の期日の公示又は告示の日から選舉の期日まで及び選舉の期日經過後になされた寄附及びその他の收入並びに支出については、これを併せて精算し、選舉の期日から15日以内に
- 二 前号の精算届出後になされた寄附及びその他の收入並びに支出については、その寄附及びその他の收入並びに支出がなされた日から7日以内に
- 三 第1項の報告書には、眞實の記載がなされていることを誓う旨の文書を添えなければならない。

## 5. 조사기관의 현황과 조사권한

### (1) 조사기관 현황

- 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함.

### (2) 조사권한

-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된 선거비용수지보고서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 「공직선거법」

제 193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도부현의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정촌의 선거관리의원회는, 제 198조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조사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공직후보자 그 외의 관계자에 대해서 보고서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第193條 中央選舉管理會、都道府縣の選舉管理委員會又は市町村の選舉管理委員會は、第189條の規定による報告書の調査に關し必要があると認めるときは、公職の候補者その他關係人に對し、報告又は資料の提出を求めることができる。

- 참고로 정치자금의 감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짐.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자격소지자가 ‘등록정치자금감사인’으로 등록하여 국회의원관계정치단체[(참의원, 중의원과 관련한 공직후보자가 대표인 단체(해당 선거가 이루어지는 정당의 지부포함), 참의원, 중의원과 관련한 공직후보자를 추천 및 지지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인 단체)]의 정치자금을 감사함.

- 국회의원관계정치단체는 등록정치자금감사인과 계약을 통해 정치자금감사를 실시함.
- 총무성 산하 정치자금적정화위원회는 정치자금감사의 구체적인 방침 및 감사인의 연수 등을 담당함.

□ 정치자금적정화 위원회 구체적 조사방침의 주요내용

(2013년 5월 개정판 정치자금조사 매뉴얼 참고<sup>53)</sup>)

- \* 회계장부 등 관련서류의 일부를 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 전체를 조사해야 함. 따라서 영수증 등의 증명서류와도 전부 대조하여 조사.
- \* 정치자금수지보고서 및 회계장부 등은 실제서류로 조사해야 하며 영수증 등도 복사물이 아닌 실제 영수증을 확인해야함.
- \* 보관이 필요한 서류는 서류에 대한 일람표를 작성하여 함께 보관하고, 영수증 등은 날짜, 금액, 목적 등을 기재하여 보관했는지 확인.
- \* 영수증 등 확인서류의 첨부가 어려운 사항(대중교통, 축의금, 송금 등)에 대해서는 감사인이 국회의원정치단체의 회계담당자에게 직접 히어링을 실시.

- 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정을 요청, 정정된 내용을 다시 공표함.

(3) 총무성령에 의한 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 양식<sup>54)</sup>

○ 수입관련 항목

월일	금액 또는 견적액	종별	기부한 사람			금전 이외의 기부 및 그 외의 수입 견적 근거	비고
			주소 또는 주요 사무처의 소재지	성명 또는 단체	직업		

53)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30700.pdf](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30700.pdf)

54) 총무성 홈페이지 [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30604.pdf](http://www.soumu.go.jp/main_content/000230604.pdf)

○ 지출관련 항목

월일	금액 또는 건적액	구분	지출의 목적	지출을 받은 자			금전이외의 지출의 근거	비고
				주소 및 주요 무소재지	성명 또는 단체	직업		

(4)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벌칙)

○ 벌금형

- 출납책임자가 규정을 넘은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지출하도록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5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당선무효

- 출납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해 형에 처해졌을 경우 그 공직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됨.

「공직선거법」

제 247조 출납책임자가 제 196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금액을 넘은 선거운동(재외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선거인(제 49조의 2 제 1항에 규정한 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으로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에 당선에 있어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자의 투표에 관한 선거운동으로 국외에 있는 자는 제외)에 관한 지출 하거나 지출하도록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5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51조의 2

3. 출납책임자가 제247조의 죄를 범해서 형에 처해졌을 때는 해당출납책임자에 관계한 공직 보자였던 자의 당선은 무효가 되고 동시에 그 자는 제 251의 5에 규정한 때부터 5년간 해당 선거에 관계하는 선거구(선거구가 없을 때는 선거가 행해지는 구역)에 있어서 행해지는 해당 공직에 관계한 선거에 후보자가 되거나 공직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 1항의 전 단락의 규정을 준용한다.

(選舉費用の法定額違反)

第二百四十七條 出納責任者が、第九十六條の規定により告示された額を超えて選舉運動（専ら在外選舉人名簿に登録されている選舉人（第四十九條の二第一項に規定する政令で定めるものを除く。）で衆議院議員又は參議院議員の選舉において投票をしようとするものの投票に關してする選舉運動で、國外においてするものを除く。）に關する支出をし又はさせたときは、三年以下の禁錮又は五十万円以下の罰金に處する。

第二百五十一條 の二

3 出納責任者が第二百四十七條の罪を犯し刑に處せられたときは、当該出納責任者に係る公職の候補者であつた者の當選は、無効とし、かつ、その者は、第二百五十一條の五に規定する時から五年間、当該選舉に係る選舉區（選舉區がないときは、選舉の行われる區域）において行われる当該公職に係る選舉において、公職の候補者となり、又は公職の候補者であ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場合においては、第一項後段の規定を準用する。

## 6. 선거비용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의 오류를 사후에 정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 및 제재가 미비한 실정임.

○ 다음은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임.<sup>55)</sup>

<사례1>

- 2001년, 2004년에 치러진 중의원, 참의원 선거에 있어서 요미우리신문사가 여·야당 간부의 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5명의 보고서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정됨.
- 보고서의 지출액은 선거비용의 공적부담 지원금액까지 포함해 수입과 수지를 맞추는데, 선거 후 공적부담 지원금이 의원에게 돌아가면 결국 그 비용이 의원 측에 남게 되는 것을 지적함.

55) 요미우리신문 2007년 6월 21일 <http://www.yomiuri.co.jp/election/sangiin2007/news/20070621it07.htm>

<사례 2><sup>56)</sup>

- 2013년 10월 치러진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시장선거에 있어서 당시 후쿠다 후보(현재 가와사키시 시장)가 제출한 선거운동비용수지보고서에서 문제점 발견됨.
- 선거기일 전일인 10월 26일 사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한 11명의 노동자에게 보수를 지급함과 동시에 수입란에는 그 11명에게 동일 금액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됨.
- 관련 회계책임자는 11명의 노동자를 (후보자 지지운동이 아닌) 단순 노동자로 인식했다며 위법성을 부인하고 후쿠다시장은 ‘인식의 부족’이라고 해명함.

<첨부 1>

「공직선거법」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원의 선거관리비용의 국고부담)  
제 263조 중의원의원 또는 참의원의 선거에 관해 다음에 기재하는 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한다.

- 1) 투표 용지 및 봉투, 제 49조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에 관한 부재자 투표의 설명서 및 그 봉투, 투표함의 제조에 필요한 비용
- 2) 선거사무를 위해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선거관리위원회,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및 선거분회장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
- 3) 투표소, 기일 전 투표소, 개표소, 선거회장 및 선거분회장에 필요한 비용
- 4) 제 49조 제 1항 및 제 4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에 관한 선거사무를 위한 부재자투표관리자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 및 그 투표기재 장소에 필요한 비용, 동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행해지는 우편 등에 의한 송부에 필요한 비용과 동조 제 7항 및 제 8항의 규정에

56) 가나가와신문 2014년 1월 23일 [http://www.kanaloco.jp/article/66561/cms\\_id/66352](http://www.kanaloco.jp/article/66561/cms_id/66352)

의해 행해지는 송신에 필요한 비용

4-2) 재외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증의 제조와 재외선거인증의 교부에 필요한 비용

4-3) 제 49조의 2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해 행해지는 투표에 관련한 비용(재외선거인의 투표기재 및 송부)

5)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 선거장, 선거분회장, 투표입회인, 개표입회인 및 선거입회인에 대한 보수 및 비용변상에 필요한 비용

5-2) 제 131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표찰에 필요한 비용 (선거사무실 앞 표찰)

5-3) 제 141조 제 5항 및 제 164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에 필요한 비용(차량, 선박 등의 표시)

5-4) 제 141조 제 7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자동차의 사용에 관한 비용(중의원 소선거구 및 참의원)

6) 제 14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엽서의 비용 및 동 조항 제 10호의 규정에 의한 통상엽서 및 선전물의 비용

6-2) 제 143조 제 1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및 간판의 종류 및 포스터 작성에 필요한 비용(개인연설회)

7) 제 1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게시관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8) 제 149조의 규정에 의한 신문광고에 필요한 비용

9) 제 150조 및 제 151의 규정에 의한 방송에 필요한 비용

10) 제 16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설회를 위한 시설(설비를 포함), 제 164조의 5의 규정에 의한 표기 제 141조의 2 및 제 제 164의 7의 규정에 의한 완장에 관한 비용

10-2) 제 164조의 2 제 6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 및 간판종류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11) 제 175조의 규정에 의한 게시에 필요한 비용(투표기재 장소의 이름 등의 표시)

12) 제 17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기관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의 의원 및 장의 선거관리비용의 지방공공단체부담)

제 264조 지방공공단체의 의원 및 장의 선거에 관련한 다음에 기재하는 비용은 해당 지방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1) 전 조 제 1항부터 제 4항까지, 제 5항의 3,항, 제 6호 제 10호 및 제 11호에 기재하는

비용

- 2) 전조 제 9호에 게재한 자에 대한 보수 및 비용변상에 필요한 비용
2. 도도부현지사의 선거에 관한 전조 제 3호의 2, 제 7호부터 제 9호까지 및 제 12호에 게재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도도부현의 부담으로 한다.
3. 제 141조 제 8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용 자동차의 사용에 필요한 비용, 제 142조 제 1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전물 작성에 필요한 비용, 제 143조 제 15항의 규정에 의한 포스터작성에 필요한 비용, 제 144조의 2 제 8항 및 제 144조의 4의 규정에 의한 게시판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 17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의 발행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지방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4. 도도부현의 의회의 의원 및 도도부현지사의 선거와 시정촌의 의회의 의원 및 시정촌의 선거를 동시에 행할 경우의 비용 구분에 대해서는 관계 지방공공단체가 협의해 정한다.

「국회의원 선거 등 집행경비기준에 관한 법률」

(경비의 기준의 산정)

제 3조 국회의원의 선거 등의 집행경비의 기준은 다음에 게재하는 경비의 종목에 대해 정한다.

- 1) 투표소경비
- 2) 기일 전 투표소경비
- 3) 투표소 경비
- 4) 선거회경비 및 선거분회 경비
- 5) 선거공보발행비
- 6) 후보자의 성명 등 게시 비용
- 7) 포스터 게시비용
- 8) 연설회의 설비 공영비용
- 9) 신문광고 공영비용
- 10) 정견방송공영비용 및 경력방송공영비용
- 11) 선거운동용 자동차사용 공영비용
- 12) 통상엽서 작성 공영비용
- 13) 선전물 작성 공영비용
- 14) 선거사무소의 입찰 및 간판 종류의 작성 비용
- 15) 선거운동용 자동차 또는 선박의 입찰 및 간판 종류의 작성 공영비용
- 16) 포스터 작성 비용
- 17) 개인연설회장의 입찰 및 간판 종류의 작성 공영비용

- 18) 사무비
- 19) 부재자투표 특별경비
- 20) 재외선거 특별경비

「公職選舉法」

(衆議院議員又は參議院議員의 選舉管理費用의 國庫負擔)

第263條 衆議院議員又は參議院議員의 選舉に關する次に掲げる費用は、國庫の負擔とする。

- 一 投票の用紙及び封筒、第49條第1項の規定による投票に關する不在者投票証明書及びその封筒並びに投票箱の調製に要する費用
- 二 選舉事務のため都道府縣及び市町村の選舉管理委員會、投票管理者、開票管理者、選舉長及び選舉分會長において要する費用
- 三 投票所、期日前投票所、開票所、選舉會場及び選舉分會場に要する費用
- 四 第49條第1項及び第4項の規定による投票に關する選舉事務のため不在者投票管理者において要する費用及びその投票記載の場所に要する費用、同條第2項の規定により行われる郵便等による送付に要する費用並びに同條第7項及び第8項の規定により行われる送信に要する費用
- 四の二 在外選舉人名簿及び在外選舉人証の調製並びに在外選舉人証の交付に要する費用
- 四の三 第49條の2第1項第2号の規定により行われる投票に關する費用
- 五 投票管理者、開票管理者、選舉長、選舉分會長、投票立會人、開票立會人及び選舉立會人に對する報酬及び費用弁償に要する費用
- 五の二 第131條第3項の規定による標札に要する費用
- 五の三 第141條第5項及び第164條の2第2項の規定による表示に要する費用
- 五の四 第141條第7項の規定による選舉運動用自動車の使用に要する費用
- 六 第142條第1項の規定による通常葉書の費用並びに同條第10項の規定による通常葉書及びビラの作成に要する費用
- 六の二 第143條第14項の規定による立札及び看板の類並びにポスターの作成に要する費用
- 七 第144條の2の規定による掲示場の設置に要する費用
- 八 第149條の規定による新聞廣告に要する費用
- 九 第150條及び第151條の規定による放送に要する費用
- 十 第161條の規定による個人演說會のための施設(設備を含む。)、第164條の5の規定による標旗 第141條の2及び第164條の7の規定による腕章に關する費用
- 十の二 第164條の2第6項の規定による立札及び看板の類の作成に要する費用
- 十一 第175條の規定による掲示に要する費用
- 十二 第176條の規定による交通機關の使用に要する費用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選挙管理費用の地方公共団体負担)

第264条 地方公共団体の議会の議員又は長の選挙に関する次に掲げる費用は、当該地方公共団体の負担とする。

- 一 前条第1号から第4号まで、第5号の3、第6号、第10号及び第11号に掲げる費用
- 二 前条第9号に掲げる者に對する報酬及び費用弁償に要する費用

2 都道府県知事選挙に関する前条第5号の2、第7号から第9号まで及び第12号に掲げる費用については、当該都道府県の負担とする。

3 第141条第8項の規定による選挙運動用自動車の使用に要する費用、第142条第11項の規定によるビラの作成に要する費用、第143条第15項の規定によるポスターの作成に要する費用、第144条の2第8項及び第144条の4の規定による掲示場の設置に要する費用並びに第172条の2の規定による選挙公報の発行に要する費用については、当該地方公共団体の負担とする。

4 都道府県の議会の議員及び都道府県知事選挙と市町村の議会の議員及び市町村長の選挙を同時に行う場合の費用の負担区分については、関係地方公共団体が協議して定める。

「國家議員の選挙等の執行経費の基準に関する法律」

(経費の基準の算定)

第三條 國會議員の選挙等の執行経費の基準は、次に掲げる経費の種目について定める。

- 一 投票所経費
- 二 期日前投票所経費
- 三 開票所経費
- 四 選挙会経費及び選挙分会経費
- 五 選挙公報発行費
- 六 候補者氏名等掲示費
- 七 ポスター掲示場費
- 八 演説会施設公営費
- 九 新聞廣告公営費
- 十 政見放送公営費及び経歴放送公営費
- 十一 選挙運動用自動車使用公営費
- 十二 通常葉書作成公営費
- 十三 ビラ作成公営費
- 十四 選挙事務所の立札及び看板の類作成公営費
- 十五 選挙運動用自動車又は船舶の立札及び看板の類作成公営費
- 十六 ポスター作成公営費

- 十七 個人演說會場の立札及び看板の類作成公營費
- 十八 事務費
- 十九 不在者投票特別經費
- 二十 在外選舉特別經費

## 첨부 2

### 「공직선거법」

제 197조의 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중의원 소선거구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등록정당이 행하는 것 및 참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참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행하는 것을 제외. 이하 이 항에 및 각 항에 있어서 동일)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지급 할 수 있는 실비변상 및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해 지급 할 수 있는 보수 및 실비변상액에 대해서는 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참의원 비례대표 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 이외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사무원 오로지 제 141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및 선박 상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및 오로지 수화통역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실비변상의 외 해당선거에 관해 제 86조 제 1항부터 제 3항까지 혹은 제 8항, 제 86조의 3 제 1항 혹은 동조 제 2항에 있어서 준용하는 제 86조의 2 제 9항 전 단락 및 제 86조의 4 제 1항, 제 2항, 제 5항, 제 6항 혹은 제 8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 있는 날부터 그 선거의 기일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한해, 공직 후보자 1인에 있어서 1일 50명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선거별로 정령에서 정한 인원수의 범위에 있어서 1인 1일에 대해 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 해당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참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회)가 정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 중의원(소선거구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 신고정당은 해당후보자신고정당이 행하는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 (해당후보자신고정당이 행하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사무원 오직 제 141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선박 상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및 오로지 수화통역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 한함)에 대해서 해당선거에 관해 제 86조 제 1항 및 제 8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 있는 날부터 그 선거기일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한해, 1인 1일에 관해 정령에서 정한 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중의원(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은 해당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행하는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자(해당중의원명부신고정당 등이 행하는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사무원, 오직 제 141제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선박 상에 있어서 선거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 및 오로지 수화통역을 위해 사용하는 자에 한함)에 대해서 해당선거에 관해 제 86조의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신고가 있는 날부터 그 선거기일의 전 날까지의 기간에 한해, 1인 1일에 관해 정령에서 정한 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5. 제 2항의 규정에 의해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직후보자 등이 정령에서 정한 것에 의해 해당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참의원 비례대표선출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회)에 신고한 자에 한함.

第九十七條之二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舉以外の選舉においては、選舉運動（衆議院小選舉區選出議員の選舉において候補者届出政党が行うもの及び參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舉において參議院名簿届出政党等が行うものを除く。以下この項及び次項において同じ。）に従事する者に對し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實費弁償並びに選舉運動のために使用する勞務者に對し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報酬及び實費弁償の額については、政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当該選舉に關する事務を管理する選舉管理委員會（參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舉については、中央選舉管理會）が定める。

2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舉以外の選舉においては、選舉運動に従事する者（選舉運動のために使用する事務員、専ら第一百四十一條第一項の規定により選舉運動のために使用される自動車又は船舶の上における選舉運動のために使用する者及び専ら手話通譯のために使用する者に限る。）については、前項の規定による實費弁償のほか、当該選舉につき第八十六條第一項から第三項まで若しくは第八項、第八十六條の三第一項若しくは同條第二項において準用する第八十六條の二第九項前段又は第八十六條の四第一項、第二項、第五項、第六項若しくは第八項の規定による届出のあつた日からその選舉の期日の前日までの間に限り、公職の候補者一人について一日五十人を超えない範囲内で各選舉ごとに政令で定める員數の範囲内において、一人一日につき政令で定める基準に従い当該選舉に關する事務を管理する選舉管理委員會（參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舉については、中央選舉管理會）が定める額の報酬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3 衆議院（小選舉區選出）議員の選舉においては、候補者届出政党は、当該候補者届出政党が行う選舉運動に従事する者（当該候補者届出政党が行う選舉運動のために使用する事務員、専ら第一百四十一條第二項の規定により選舉運動のために使用される自動車又は船舶の上における選舉運動のために使用する者及び専ら手話通譯のために使用する者に限る。）に對し、当該選舉につき第八十六條第一項又は第八項の規定による届出のあつた日からその選舉の期日の前日までの間に限り、一人一日につき政令で定める額の報酬を支給することがで

きる。

4 衆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舉においては、衆議院名簿届出政党等は、当該衆議院名簿届出政党等が行う選舉運動に従事する者（当該衆議院名簿届出政党等が行う選舉運動のために使用する事務員、専ら第百四十一條第三項の規定により選舉運動のために使用される自動車又は船舶の上における選舉運動のために使用する者及び専ら手話通譯のために使用する者に限る。）に對し、当該選舉につき第八十六條の二第一項の規定による届出のあつた日からその選舉の期日の前日までの間に限り、一人一日につき政令で定める額の報酬を支給することができる。

5 第二項の規定により報酬の支給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者は、公職の候補者が、あらかじめ、政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当該選舉に關する事務を管理する選舉管理委員會（參議院比例代表選出議員の選舉については、中央選舉管理會）に届け出た者に限る。



## 호 주

호주 연구관 : 박호언

### 1. 선거비용(선거자금) 관계 법규

#### (1) 관련 규정과 감독기관 현황

- 선거비용 관련 규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법률에 각각 따로 규정되어 있음. 선거관리기관의 권한은 주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선거비용 관련 규정은 대부분 비슷한 상황임.
  - 연방선거의 경우 「연방선거법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Cth))」(이하 「연방선거법」)이 모든 연방선거를 규제하고 있으며, 동법 제316조에 의거하여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본 조 제3항은 조사권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나머지 조항은 벌금 또는 형사고발 체계에 대해 기술되어 있음.
  - 각 주의 법률은 선거비용 보전제도를 제외하고 연방법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 선거비용 보전제도는 주 선거의 경우 남호주, 태즈메이니아, 북부준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실시되고 있음. 서호주는 현재 이를 폐지할 것을 논의 중에 있음.

(2) 법규별 주요내용

- 「연방선거법」은 호주연방선거와 관련한 선거비용의 수입, 지출 총액을 모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해당 법률을 분석해보면 영국 등 영연방 국가와는 다르게 미국처럼 외부 기부 등 수입에 대한 중점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또는 그에 준하는 물품에 해당할 경우 기부자 이름, 주소 그리고 액수를 의무보고하도록 규제함.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Cth)*」 )

**Investigation etc. (Section 316) 제316조 조사 및 관련 사항**

(1) In this section:

"authorised officer" means a person authorised by the Electoral Commission under subsection

"prescribed person" means a person whose name is included in a list in a report mentioned in subsection 17(2A).

(1) 본조에서:

“위임 받은 공무원”의 의미는 본조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조사권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본 법에서 규정된 용의자”의 의미는 17조 2A항에 의거 규정된 자를 의미한다. (17조 2A항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처벌이 필요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2) The Electoral Commission may, by instrument in writing signed by the Electoral Commissioner on behalf of the Electoral Commission, authorize a person or a person included in a class of persons to perform duties under this section.

(2)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 조에 언급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2A) An authorised officer may, for the purpose of finding out whether a prescribed person, the financial controller of an associated entity or the agent of a registered political party has complied with this Part, by notice served personally or by post on:

- (a) the agent or any officer of the political party; or
- (aa) the financial controller of the associated entity or any officer of the associated entity; or
- (b) the prescribed person or, if the prescribed person is a body corporate, any of its officers;

as the case may be, require the agent, financial controller, person or officer:

(c) to produce, within the period and in the manner specified in the notice, the documents or other things referred to in the notice; or

(d) to appear, at a time and place specified in the notice, before the authorised officer to give evidence, either orally or in writing, and to produce the documents or other things referred to in the notice.

(2A) 위임받은 공무원은 법에 규정된 용의자의 범법 행위를 규명하기 위해 법인 또는 본절에 규정된 등록된 정당의 회계책임자 등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조사를 통보하고,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a) 정당에 소속된 모든 직원 또는 변호인

(aa) 법인 또는 정당의 회계 책임자

(b) 해당 용의자, 만약 해당 범죄를 저지른 객체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직원 이때, 위에 언급된 직원, 회계책임자, 그리고 사람은

(c) 공문에 명시된 회신 기간 및 방식에 따라, 각종 문서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d) 공문에 명시된 회신 기간 및 방식에 의거, 당 공무원에게 출두하여 문서와 같은 관련 증거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2B) If a notice under paragraph (2A)(a) requires an officer of a political party (other than the agent) to appear before an authorised officer under paragraph (2A)(d), then the agent of the political party is entitled:

(a) to attend at the proceeding under paragraph (2A)(d); or

(b) to nominate another person in writing to attend on behalf of the agent.

(2B) 만약 정당의 직원이 제(2A)(d)조에 의거 출두하여야 한다면, 그 정당의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권리를 보장 받는다.

(a) 해당 심문에 같이 참석할 수 있다.

(b) 다른 자를 변호인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지명할 수 있다.

(2C) Failure of the agent or nominee to attend under subsection (2B) does not affect the powers of the authorised officer to conduct the proceeding under paragraph (2A)(d).

(2C) 만약 당 변호인이 제2B조에 의거하여, 대신 참석하는 자를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도, 당 공무원의 조사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D) Where a body corporate, unincorporated body or individual has made a gift or disposition of property of \$25,000 or more to a registered political party or candidate, an authorised officer must conduct an investigation of that gift or disposition of property in accordance with this section.

(2D) 만약 법인, 비법인, 또는 개인이 정당에 25,000 호주불 이상에 해당하는 선물을 제공할 경우, 당 공무원은 반드시 본조에 의거 해당 물품에 대해 조사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3) Where an authorized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person is capable of producing documents or other things or giving evidence relating to a contravention, or possible contravention, of section 315, or relating to matters that are set out in, or are required to be set out in, a claim or return under this Part, the authorized officer may, by notice served personally or by post on that person, require that person:

(a) to produce, within the period and in the manner specified in the notice, such documents or other things as are referred to in the notice; or

(b) to appear, at a time and place specified in the notice, before the authorized officer to give evidence, either orally or in writing, and to produce such documents or other things as are referred to in the notice.

(3) 만약 당 공무원이, 제315조에 기술된 각종 위반행위 및 본 절에 기술된 각종 민원에 근거하여, 범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의심할 경우, 관련자들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명할 수 있다.

(c) 공문에 명시된 회신 기간 및 방식에 따라, 각종 증거자료, 문서 등을 제출

(d) 공문에 명시된 회신 기간 및 방식에 의거, 당 공무원에게 출두하여 문서와 같은 관련 증거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

(3A) If:

(a) an authorised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a person is capable of producing documents or other things, or giving evidence, relating to whether an entity is, or was at a particular time, an associated entity; and

(b) the person is, or has at any time been, the financial controller or an officer of the entity;

the authorised officer may, by notice served personally or by post on the person, require the person:

(c) to produce, within the period and in the manner specified in the notice, such documents or other things as are specified in the notice; or

(d) to appear, at a time and place specified in the notice, before the authorised officer to give evidence, whether orally or in writing, and to produce the documents or other things specified in the notice.

The notice must not require the person to produce documents, or to appear, until after the end of the period of 14 days beginning on the day on which the notice was received, and must set out the person's right to request a review under subsection (3B).

(3A) 만약:

(a) 당 공무원이, 피조사 대상인 자연인 또는 조사 대상인 법인이 충분히 조사를 받고, 증거를 제출할 의사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b) 피조사인이 조사 대상 법인의 회계 책임자 또는 직원일 경우  
당 공무원은 직접 또는 우편으로 당사자에게:

(c) 공문에 명시된 회신 기간 및 방식에 따라, 각종 증거자료, 문서 등을 제출

(d) 공문에 명시된 회신 기간 및 방식에 의거, 당 공무원에게 출두하여 문서와 같은 관련 증거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 명령은 반드시 14일 이내에 출두하여 진술하도록 명령할 필요는 없고, 본조 3B항에 의거한 각종 채심 권리를 명시해야한다.

(3B) A person who is given a notice under subsection (3A) may request that the Electoral Commission review the decision to issue the notice. The request must be:

(a) in writing; and

(b) given to the Electoral Commission during the period of 14 days beginning on the day on which the notice was received.

(3B) 본조 3A항에 의거 출두를 명받은 피조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명령에 대한 채심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요청은 반드시

(a) 서면으로 되어야 하며

(b) 14일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C) The Electoral Commission must:

(a) review the decision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receiving a request under subsection (3B); and

(b) affirm, vary or set aside the decision; and

(c) notify the person in writing of its decision on the review.

(3C) 선거관리위원회는 반드시

(a) 본조 3B에 의거 해당 명령에 대해 최대한 가능한 시기에 재심에 임해야 하며

(b) 해당 명령에 대해, 확인, 조정 그리고 무효여부를 결정해야 해야 하며

(c) 해당 재심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D) If a person requests a review of a decision, the person is not taken to have refused or failed to comply with the notice to which the review relates at any time before the Electoral Commission has notified the person of its decision on the review.

(3D) 만약 피신청인이 재심을 요구했을 경우, 그 피신청인은 해당 명령에 대한 재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의무 태만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4) An authorized officer may require any evidence that is to be given to him or her in compliance with a notice under subsection (2A), (3) or (3A) to be given on oath or affirmation and for that purpose the authorized officer may administer an oath or affirmation.

(4) 조사권을 위임받은 공무원은 본조 2A, 3 내지 3A에 의거한 증언 및 증거를 요청할 때, 해당 증언 및 증거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징구하거나 선서를 받을 수 있다.

(5)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the person refuses to comply with a notice under subsection (2A), (3) or (3A) to the extent that the person is capable of complying with the notice.

Penalty: \$1,000.

(5) 의사능력이 있으면서도, 본조 제2A, 3 내지 3A에 의해 요청된 증거 제출 또는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다.

1,000 호주불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5A) A person is guilty of an offence if the person fails to comply with a notice under subsection (2A), (3) or (3A) to the extent that the person is capable of complying with the notice.

Penalty: \$1,000.

(5A) 의사능력이 있으면서도, 본조 제2A, 3 내지 3A에 의해 요청된 증거 제출 또는 증언을 행하지 못한 것은 범죄행위이며,

1,000 호주불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5B) Strict liability applies to an offence against subsection (5A).

Note: For strict liability , see section 6.1 of the Criminal Code .

(5B) 제5A에 반한 범죄는, 무과실 책임을 적용한다.

주: 무과실 책임의 의미는, 형법 제6.1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5C) Subsection (5) or (5A) does not apply if the person has a reasonable excuse.

Note: A defendant bears an evidential burden in relation to the matter in subsection (5C) (see subsection 13.3(3) of the Criminal Code ).

만약, 피의자가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본조 5조 내지 5A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 피고인은 본조에 의한 방어권을 행사할 경우, 증거 제출의 의무가 있다 (이때 형법 13.3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6) A person shall not, in purported compliance with a notice under subsection (2A), (3) or (3A), give evidence that is, to the knowledge of the person, false or misleading in a material particular.

Penalty: \$1,000 or imprisonment for 6 months, or both.

(6) 피의자는 본조 2A, 3 내지 3A항에 의거한 명령에 있어, 위조, 거짓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 안된다.

1,000 호주불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거나 6개월에 해당하는 징역형에 처하거나, 두 형 모두 처한다.

(7) Where:

(a) an authorized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for suspecting that there may be, at any time within the next following 24 hours, upon any land or upon or in any premises, vessel, aircraft or vehicle, a document or other thing that may afford evidence relating to a contravention of section 315; and

(b) the authorized officer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if a notice under this section were issued for the production of the document or other thing, the document or other thing might be concealed, lost, mutilated or destroyed;

the authorized officer may make an application to a magistrate for the issue of a warrant under subsection (8).

(7) 만약

(a) 공무원이 24시간 이내, 어떤 장소, 선박, 항공기, 그리고 차량에 있어, 본법 제315조에 반하는 범죄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발견될 수 있다고 의심하거나

(b) 당 공무원이 증거가 은닉, 인멸, 파쇄 또는 파괴 될 것이라고 의심한다면, 당 공무원은 법원에 본조 8항에 의거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법원의 일반적 권한에 대한 것임)

## 2. 선거비용의 수입범위

### (1) 선거비용 확보방법

#### 가. 정부지원금

- 연방선거법 제20장 제1절에 규정된 계산 방식에 따라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정부지원금을 각 정당에 배부하고 있음.
  - 동 제도는 1984년 밥 호크 정부 때 신설된 것으로 선거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민간 지원금에 대한 의존을 줄여 보다 공적인 정당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것임<sup>57)</sup>.
- 지원금액은 선거비용에 대한 지출액이 아닌 1차 개표에 따른 득표수에 맞추어 현금으로 보전하는 제도임<sup>58)</sup>.
  - 이 제도를 통해 지원 받기 위해서는 각주별로 설치된 연방상원 중선거구 또는 각 연방하원 소선거구에서 4% 이상의 득표를 얻어야만 해당 선거구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 후 1차 개표에 있어 득표수당 2달러 56.067센트(2014년 7월 1일

57) "Are our politicians for sale?", Melbourne: The Age, 2006년 5월 23일 기사

58) "Election funding", Canberra,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4년 6월 15일 확인

- 부터)를 지원 받음. 이 금액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달라짐<sup>59)</sup>.
- 해당 규정은 첫 번째 투표에서 가장 많이 득표를 한 정당이 제일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고, 1차 개표에 있어 4%이상 득표한 군소정당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 있으나,
  - 통계를 살펴보면 호주 보수연립(자유당, 지역당 연합체)과 노동당에 97%에서 99%가 배정되고 있음<sup>60)</sup>. 따라서 호주의 정부지원금 제도는 양대 정당에 매우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음.

「연방선거법」 ( 「*Commonwealth Electoral Act 1918 (Cth)*」 )

General entitlement to funds. (Section 294) 제294조 보통 선거비용 보전 방법

(1) Subject to this Division, \$1.50 is payable for each first preference vote given for a candidate in a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1) 본 절에 제한하여, 각 하원의원 후보자에 대해 1번째 개표 후 각 득표에 대해 1,50 호주불을 지급한다.

(2) Subject to this Division, \$1.50 is payable for each first preference vote given for a candidate or group in a Senate election.

(2) 본 절에 제한하여, 각 상원의원 후보 그룹에 대해 1번째 개표 후 각 득표에 대해 1,50 호주불을 지급한다.

.... (3) 항은 삭제됨

Payment not to be made in certain circumstances (Section 297) 제297조 보전이 되지 않는 경우들

(1) A payment under this Division shall not be made in respect of votes given in an election for a candidate unless the total number of eligible votes polled in the candidate's favour is at least 4% of the total number of eligible votes polled in favour

59) "Current funding rate", Canberra,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4년 6월 15일 확인

60) "Chapter 3, The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in the Anglo-Saxon Orbit,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International IDEA, Nassamacher, Stockholm, 스웨덴, 41페이지 2003년 출판

of all of the candidates in the election.

(1) 만약 첫 번째 개표에 있어, 각 하원의원 후보자의 총득표수 대 득표율이 최소 4%가 되지 않는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할 수 없다.

(2) A payment under this Division shall not be made in respect of votes given in an election for a group unless the total number of eligible votes polled in favour of the group is at least 4% of the total number of formal first preference votes cast in the election.

(1) 만약 첫 번째 개표에 있어, 각 상원의원 그룹의 총득표수 대 득표율이 최소 4%가 되지 않는 경우, 선거비용을 보전할 수 없다.

#### 나. 비정부지원금(개인, 단체 등)

- 선거비용 대부분은 외부에서 지원 또는 모금 받는 것으로 이루어짐.
- 진성당원이 내는 당비나 단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는 선거비용의 극히 일부만 충당하는 추세임<sup>61)</sup>.

#### (2) 수입의 범위

- 호주정당의 수입은 정부지원금, 비정부지원금 그리고 기업으로부터 받는 기부금으로 나뉨<sup>62)</sup>.
- 유일하게 뉴사우스웨일즈주만 개인기부금 이외 모든 기부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Election Funding, Expenditure and Disclosures Amendment Act 2011* (NSW)」 (이하 선거비용 기부, 사용, 보고에 관한 법 개정안)을 통해 「*Election Funding, Expenditure and*

61) "Chapter 3, The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in the Anglo-Saxon Orbit,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International IDEA, Nassamacher, Stokholm, 스웨덴, 37페이지 2003년 출판

62) "Chapter 3, The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in the Anglo-Saxon Orbit,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International IDEA, Nassamacher, Stokholm, 스웨덴, 39페이지 2003년 출판

*Disclosures Act 1981* (NSW)」이 개정되었다. 이는 호주 전역을 통틀어 유일하게 선거를 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장치로 노동조합,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 등으로부터의 모든 기부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개인만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음.

- 다른 모든 주와 연방 선거에 있어서는 외부 기부금에 대한 제제가 없음.

「선거비용 기부, 사용, 보고에 관한 법」(「*Election Funding, Expenditure and Disclosures Act 1981* (NSW)」)

96D Prohibition on political donations other than by individuals on the electoral roll - 96D조 개인으로 부터의 기부를 제외한 모든 정치적 기부를 금지

(1) It is unlawful for a political donation to a party, elected member, group, candidate or third-party campaigner to be accepted unless the donor is an individual who is enrolled on the roll of electors for State elections, the roll of electors for federal elections or the roll of electors for local government elections.

(1) 정당, 의원, 단체,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에 대해서, 뉴사우스웨일즈주, 연방정부 또는 기초자치단체 선거명부에 등록된 자로 부터의 기부를 제외한 모든 기부행위는 불법이다.

- 1984년 개정된 「연방선거법」에 의한 정부지원금 제도가 발족되기 전까지는 선거비용 대부분은 기업 기부금이 대부분이었으며, 현재는 정부지원금과 기부금이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함<sup>63)</sup>.
- 2005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노동당은 정부지원금으로 1천 6백만 호주달러, 기부금으로 6천 5백만 호주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기부받았으며, 자유당은 1천 8백만 호주달러를 정부지원금으로 받았고, 기부금

63) "Chapter 3, The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in the Anglo-Saxon Orbit, Funding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campaigns", International IDEA, Nassamacher, Stokholm, 스웨덴, 39페이지 2003년 출판

으로는 6천 6백만 호주달러를 받음<sup>64</sup>). 따라서 양 정당 모두 75%에 달하는 선거비용을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음.

### 3. 선거비용의 지출범위

- 「연방선거법」에 따라 호주연방선거의 선거비용 지출내역은 항목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sup>65</sup>).
- 선거에 있어 득표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수입에 대한 통제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지출에 대한 통제가 느슨한 것으로 평가됨.
- 「연방선거법」 등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거와 관련된 지출은 큰 제한없이 허용되는 실정임.

### 4. 선거비용에 관한 통제와 검증(제한·금지행위)

#### (1) 선거비용의 수입의 제한

- 수입제한은 1902년 뉴사우스웨일즈주 부터 점차적으로 모든 연방·주 선거에서 수입, 지출 총액을 의무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특히 다른 영연방 국가와는 다르게 미국처럼 외부 기부 등 수입에 대한 중점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 기부금 또는 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64) "The National Interest: Political Donations", 호주연방방송공사, 2004년 방영

65) "Disclosure threshold", Canberra,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4년 6월 16일 확인

서는 기부자 이름, 주소 그리고 기부액수를 모두 의무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금액 기준은 2005년 10,000 호주달러로 시작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연동하여 변동되고 있으며,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12,800 호주달러임<sup>66)</sup>.

## (2) 회계보고서의 제출과 자금의 공개

- 「연방선거법」은 선거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항목별 보고 제도를 채택해 느슨한 회계보고를 요구하고 있으나, 외부 기부 등 수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회계 보고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 특히 동법 제20장에 따르면 선거비용에 대한 출처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 총 기부자 숫자, 총액은 물론 일정 금액 이상의 기부자에 대해서는 회계 자료에 있어 반드시 기부자 이름, 주소까지 의무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각종 기부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음<sup>67)</sup>.
- 위 사안에 대해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호주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할 경우 「연방선거법」 제316조에 따라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조사가 가능함.

---

66) "Funding, Disclosure and Political Parties", Canberra,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4년 6월 16일

67) "Financial disclosure overview", Canberra,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4년 6월 16일 확인

## 5. 조사기관의 현황과 조사권한

### (1) 조사기관 현황

- 위법 선거비용 모금이 있거나 보고 의무를 게을리 했을 경우, 「연방 선거법」 제316조에 따라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각종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호주연방경찰 또한 호주 형법<sup>68)</sup>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조사가 가능함.

### (2) 조사권한

-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감사 및 수시감사를 진행할 수 있음.
  - 연방선거법 제316조 제3항은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매우 광범위하게 선거비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비용 출처에 대해서 각종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sup>69)</sup>.
  - 호주연방경찰은 형법에 따라 연방선거에 있어 선거비용 관련 사기 행위 등에 대해 조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3) 회계보고서 등 검증방법

- 「연방선거법」 제20장에 따라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 감사 및 수시감사를 통해 정당에서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검증하며, 동법

68) 「Criminal Code Act 1995 (Cth)」

69) "Financial disclosure overview", Canberra,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4년 6월 16일 확인

제316조 제3항을 통해 부여된 광범위한 조사권한을 활용하여 회계자료를 선거비용 형성방법에 주안점을 두어 검증을 실시함.

- 선거비용 출처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명시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필요시 금융 정보도 활용하고 있음.
- 정당 뿐만 아니라 기부자에 대해서도 필요시 각종 기부에 대해 각각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비교 검증하는 방법으로 회계자료를 검증하고 있음.

#### (4)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벌칙)

-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선거법」 제315조와 제316조에 따라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과 및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음<sup>70)</sup>.

#### (5) 위법행위 조치내역

-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는 「연방선거법」 제315조와 제316조에 따라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며, 특히 회계자료 미보고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sup>71)</sup>.
- 현재 총 11명의 후보자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됨.

70) "Financial disclosure overview", Canberra,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4년 6월 16일 확인

71) "List of candidates who failed to lodge a return for the 2013 election", Canberra, 호주연방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2014년 6월 16일 확인



Enrol to vote ▾ Voting ▾ Electorates ▾ Funding, disclosure and Political parties ▾ Elect

Home > Funding, Disclosure and Political Parties > Financial disclosure

## List of candidates who failed to lodge a return for the 2013 election

Updated: 24 February 2014

### Candidates who failed to lodge a return

Candidate Name	Party	Electorate
BEIGER, Nicole Louise	Smokers Rights Party	NSW
BLAKE, Charles Arthur	Australian Voice Party	McPherson
CAVANOUGH, Jamie Frederick	Australian Voice Party	Greenway
ENGLERT, Justin Francis	Katter's Australian Party	Dawson
HEWLETT, Kathleen Marree	Katter's Australian Party	Oxley
MILES, Francis John	Family First Party	Leichhardt
OBRIEN, Richard John	Outdoor Recreation Party (Stop the Greens)	NSW
PALMER, Steve Alan John	Australian Sex Party	WA
STRANG, Graeme Edwin		Cook
TERRY, Jarreau		Fisher
TITLEY, Rachel Faye	National Party of Australia (S.A.) Inc.	SA

< 선거비용 회계보고 의무위반자 명단 : 호주선관위 홈페이지 >